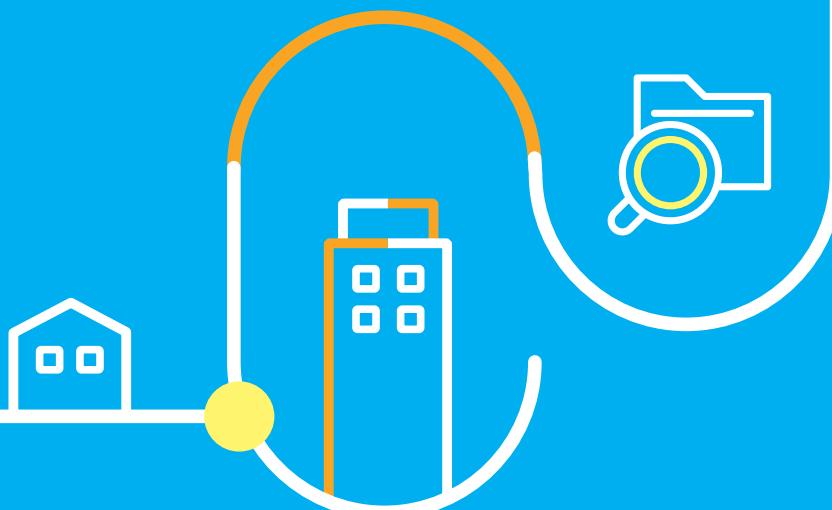




이 가이드북은 사업자가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규정하는 **표시사항**을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제품별 특성**에 따라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제작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용품 가이드북은 2021년 11월 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제품안전 관련 표시사항은
소비자 뿐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PSA
한국제품안전협회
Korea Products Safety Association



GuideBook

CONTENTS



1

제품안전관리제도

제도 개요	06
표시사항 구성	07
제품에 표시하는 방법 및 시기	09
안전기준 열람 방법	10
제품 표시사항 위반 시 처분사항	11
참고사항	13

2

품목별 표시사항

공통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16
안전인증	19
안전확인	125
공급자직합성확인	235



부록

지정 시험 기관	258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	262

Index

색인	26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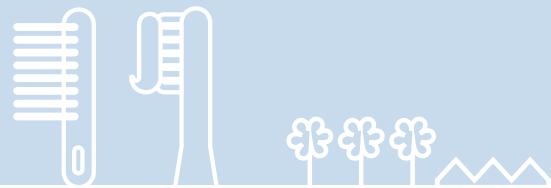




전기용품 표시사항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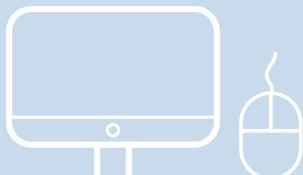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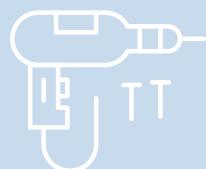
가이드북

GuideBook



1

제품안전관리제도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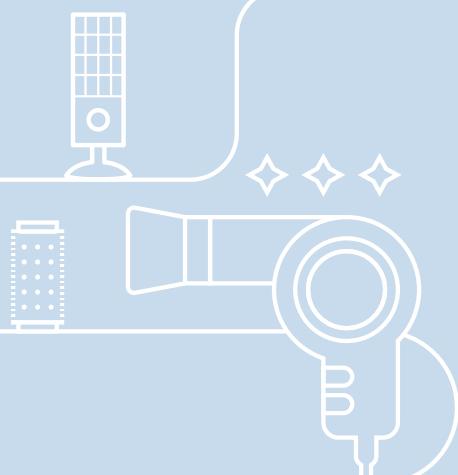
표시사항 구성

제품에 표시하는 방법 및 시기

안전기준 열람 방법

제품 표시사항 위반 시 처분사항

※ 참고사항



1

제품안전관리제도

① 제도 개요

제품시장 출시 전(사전 인증, 시험 의무 부여)

전기용품은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3가지로 안전관리 수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수입업자가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을 국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제품에는 KC표시 부착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수준별 시험·인증 절차〉

품목 구분	인증 등 준수절차
① 안전인증 (5품목)	<p>제조·수입 업자 → 신청 → [안정인증기관]</p> <p>[안정인증기관]</p> <p>→ [인증서 발급] → KC 인증번호 → 제품 판매</p> <p>[공장 심사] [제품 검사]</p>
② 안전확인 (25품목)	<p>제조·수입 업자 → 신청 → [시험검사기관]</p> <p>[시험검사기관]</p> <p>→ [안정인증기관]</p> <p>→ [신고서류 검토]</p> <p>→ [신고확인증 발급] → KC 신고번호 → 제품 판매</p> <p>[제품 검사]</p>
③ 공급자적합성 (15품목)	<p>제조·수입 업자 → 자체 또는 제3자 시험기관</p> <p>→ [제품 검사] → KC → 제품 판매</p>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

제품시장 출시 후(제품 표시사항 및 법적 안전기준 준수 의무 부여)

국내 제조·수입업자는 사전인증 등을 거쳐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후에도,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과 함께 품목별 표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면서 제품을 유통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국가기술표준원)는 시장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연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제품 표시사항과 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제품의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와 내용에 따라 **제품 수거, 개선조치 등을 명령 또는 권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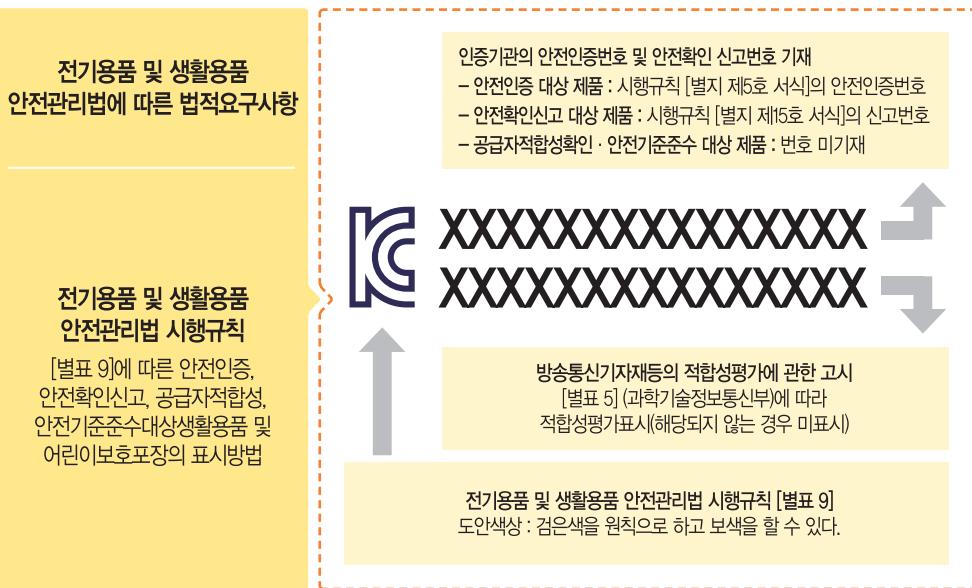


Guide Book

● 표시사항 구성

전기용품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KC표시 및 동법 운영요령에서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표시와 함께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시사항(모델명, 제조년월 등)을 조합하여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표시



The table lists optional markings required by other laws, corresponding to Table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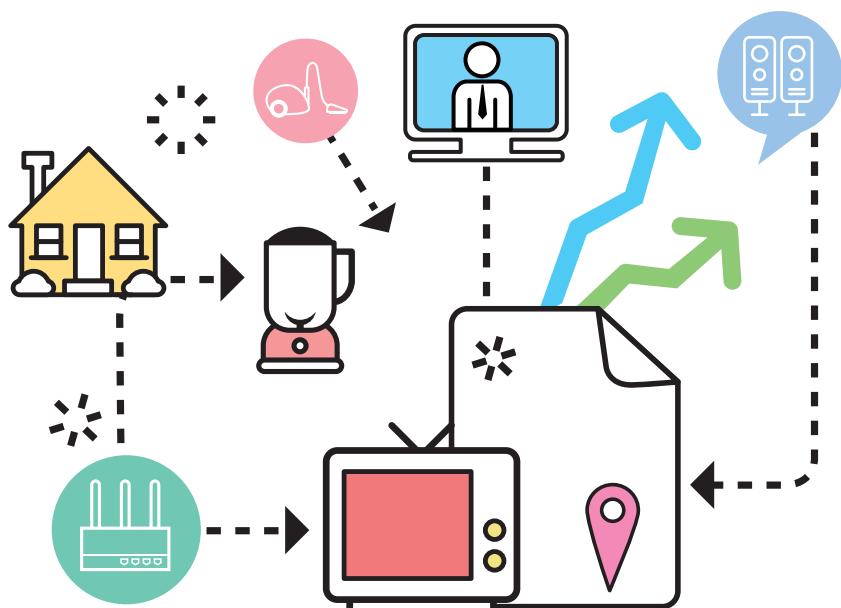
제품명	안전기준 상 제품명
모델명	제품별 세부 모델명(제품별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모델번호) *인증 받거나 신고한 경우는 인증서(안전확인 신고서)의 모델명과 동일하게 기재
제조업체명 (or 수입업체명)	제조업체명 (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 추가)
제조년월	제품의 제조사를 알 수 있는 표시 (제조년월, 로트번호,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연락처	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기재

1

제품안전관리제도

2. 전기용품 품목별 안전기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각종 표시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설명서 등을 기재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1], [별표 2], [별표 3]			
공통안전기준 + 개별안전기준		예시)	
		제 품 명	공기청정기
		모 델 명	KPSA-1100
		제조연월	2021년 11월
		제조자명	한국제품안전협회
		제조국명 (수입제품인 경우에 한함)	전화번호 02-000-0000
		수입자명 (수입제품인 경우에 한함)	
		주 소	수입자명 (수입제품인 경우에 한함)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주의사항	





Guide Book

● 제품에 표시하는 방법 및 시기

1. 표시사항 전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경우

- 마크는 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한다.
- 제품 또는 포장에 인쇄 또는 각인 등으로 식별하기 쉽도록 표시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품에 표시(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나 품목에 따라 포장에 표시해도 되는 제품이 있으니 품목별 안전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 표시사항 전체를 제품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소형제품

- 최대 단면적 400mm^2 이하는 KC마크 또는 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번호 중 1개만 표시
- 최대 단면적 400mm^2 초과 900mm^2 이하는 KC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번호를 각각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표장지 표면에 표시한다.

전선류

- 불소수지 절연전선 이외의 것은 전선 표면에 1m 이하마다(600V 고무절연 전선, 고무코드, 기타 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절연 피복 안에 넣은 테이프) 표시한다.
- 불소수지 절연전선은 1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한다.

전구류

- 제품 표면에 마크 및 정격 표시,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표장지 표면에 표시한다.

제품에 표시 불가능한 경우

- 꼬리표 또는 표장지 표면에 표시한다.

내장되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충전지

- 마크 또는 번호 중 하나를 충전지에 표시,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표장지 표면에 표시한다.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PC[전자적 표시](Electronic Labeling)]

- 전자적 표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표장에 표시한다.
- 전자적 표시의 방법 및 요구조건, 안전성 확보 등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 별표5 제3호를 준용한다.

※ 제품사용설명서는 별도 제공한다.

3.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는 시기

국내제품

제품 출고 전 표시

수입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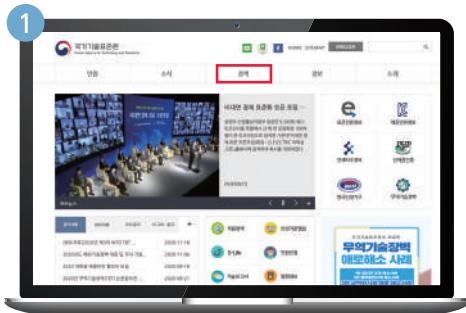
제품 통관 전 표시

1

제품안전관리제도

① 안전기준 열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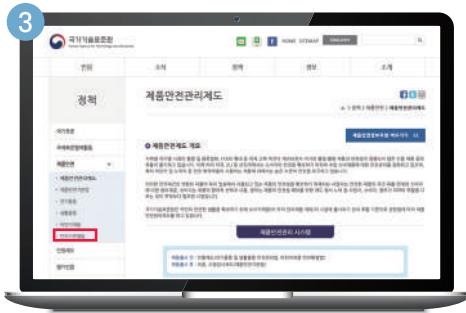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 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정책 → 제품안전



제품안전 → 안전기준 열람



안전기준 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 제품 표시사항 위반 시 처분사항

KC표시(KC마크 및 인증, 확인신고번호), 제조국, 제조년월 등의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 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선조치 권고

- 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리 등)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 · 파기 · 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에 따라 개선조치 명령 대상이 되며, 재고제품이나 향후 수입 · 제조하여 출고할 제품에 대해 개선을 완료한 후 국표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새로 이 출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조치 명령 이후 개선조치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2. 형사고발 및 과태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KC표시 임의변경, 제거,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처벌내용	처벌기준	관련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격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제품에 KC표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23호, 제29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KC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 · 대여하거나 판매 · 대여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2호, 제4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KC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2호, 제7호, 제13호, 제18호
	KC표시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4호, 제8호, 제14호
	KC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격합성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4호, 제9호, 제16호
	공급자격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제품을 판매 · 대여하거나 판매 · 대여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5호, 제19호

1

제품안전관리제도

3. 인증취소 및 표시 사용금지 등(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안전인증대상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2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3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2) 안전확인신고대상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2호	개선명령	안전확인신고 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안전확인표시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3호	개선명령	안전확인신고 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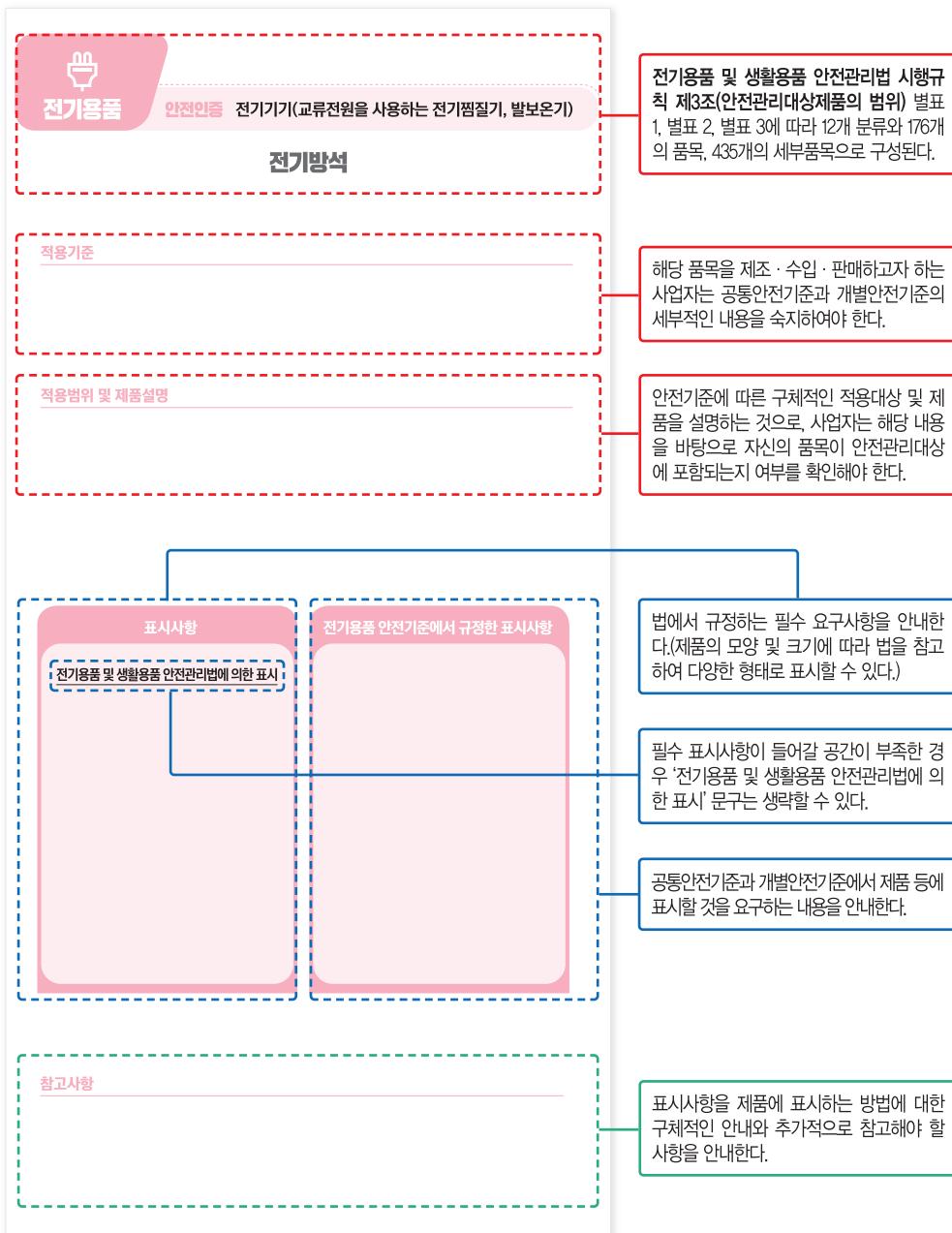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 제2호	개선명령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 제3호	개선명령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 참고사항

다음 장의 품목별 표시사항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가이드북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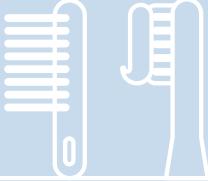




전기용품 표시사항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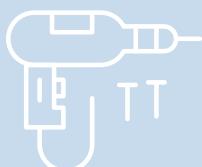
가이드북

GuideBook



2

품목별 표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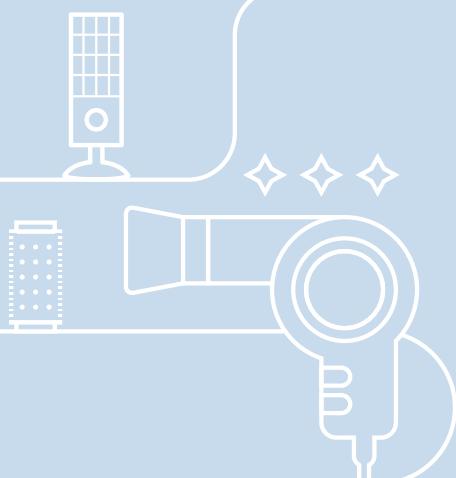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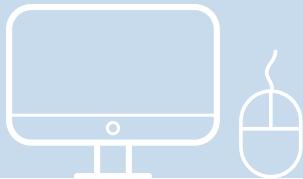


공통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공통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안전기준) KC 60335-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기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정격 전압 또는 정격 전압 범위 [V]
 - 정격 주파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전원 종류의 기호
 - 정격 입력 [W] 또는 정격 전류 [A]
 - 제조자명 또는 책임 있는 판매자명, 상표 또는 식별할 수 있는 표시
 - 모델명 또는 형식 기준
 - 2종 기기에 한하여 기호 IEC 60417-5172 (2003-02)
 -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에 따른 IP 번호(IPX0은 제외)
 - 3종 기기에 한하여 기호 IEC 60417-5180 (2003-02). 이 표시는 축전지(기기 외부에서 충전되는 1차 전지 또는 2차 전지)만으로 작동하는 기기에는 필요하지 않다.
-
- 기기를 수도관에 연결하기 위해 외부 호스 세트에 내장된 전기동작식 급수 밸브의 외함에는 그 동작 전압이 초저전압을 초과한다면 기호 IEC 60417-5036 (2002-10)을 표기하여야 한다.
-
- 복수 전원용 거치형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
- 경고: 단자에 달기 전에 모든 전원회로를 차단할 것
-
- 이 경고문은 단자 커버 근방에 표시되어야 한다.
-
- 정격값의 범위가 있는 것으로 그 전체 범위로 조정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하이픈(–)으로 표시한다.
-
- 정격값이 상이한 기기로서 사용자 또는 설치자가 특정 값에서 사용하기 위해 조정해야 하는 것은 사선(/)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값을 표시한다.
-
- 기기를 다른 정격 전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기가 조정된 전압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압 조정 빈도가 낮은 기기로서 조정되어 있는 정격 전압이 기기에 부착된 배선도에 따라 명백히 식별되면 이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
- 둘 이상의 정격 전압 또는 하나 이상의 정격 전압 범위 표시가 있는 것은 그 각각의 전압 또는 전압 범위마다 정격 입력 또는 정격 전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 전압 범위의 상한과 하한과의 차이가 정격 전압 범위의 평균값의 10 %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값을 정격 입력 또는 정격 전류로 표시할 수 있다.
-
- 입력과 전압과의 관계가 확실히 구분되도록 정격 입력 또는 정격 전류의 상한 및 하한을 기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 기호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기호 IEC 60417-5031 (2002-10)]

직류

[기호 IEC 60417-5032 (2002-10)]

교류

[기호 IEC 60417-5032-1 (2002-10)]

3상 교류

[기호 IEC 60417-5032-2 (2002-10)]

중성선 있는 3상 교류

[기호 IEC 60417-5016 (2002-10)]

퓨즈 링크

시간지연 소형 퓨즈. 여기서 ×는 KS C IEC 60127에 명시된 시간/전류에 특성에 대한 기호이다.



[기호 IEC 60417-5019 (2006-08)]

보호접지



[기호 IEC 60417-5018 (2006-10)]

기능 접지



[기호 IEC 60417-5172 (2003-02)]

2종 기기



[기호 IEC 60417-5012 (2002-10)]

램프



[기호 KS S ISO 7000-0434(2004-01)]

주의



[기호 KS S ISO 7000-0790(2004-01)]

사용설명서 읽기



[기호 IEC 60417-5021(2002-10)]

동전위성



[기호 IEC 60417-5036(2002-10)]

위험 전압



[기호 IEC 60417-5180(2003-02)]

3종 기기

- 전원 기호는 정격 전압의 표시 다음에 두어야 한다.

- 2종 기기에 관한 기호는 일종의 기술적 정보로, 다른 기호와 혼동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 물리량의 단위 및 그 기호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3개 이상의 전원 도체에 접속하는 기기 및 복수의 전원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정확한 접속방식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기에 배선도를 붙여야 한다.

- Z형 부착을 제외하고 전원접속용 단자의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 중성선 전용 단자는 문자 N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보호접지 단자는 기호 IEC 60417-5019 (2006-08)로 표시하여야 한다.

- 이러한 표시는 나사, 분리할 수 있는 와셔, 기타 도체를 접속할 때 빠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하지 않는다.



- 명백히 필요하다면 조작할 때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제어하는 스위치는 기기의 어느 부분을 제어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그러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용도의 표시는 실용상 언어나 국가표준의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거치형 기기에서 스위치의 각 위치 그리고 모든 기기의 제어장치의 각 위치는 숫자, 문자 또는 기타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제어장치의 일부가 되는 스위치에도 적용한다.
- 각 위치를 지시하기 위해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꺼짐 위치는 숫자 0으로 표시하고 출력, 입력, 속도, 냉각 효과 같이 가치가 더 큰 위치는 그림을 더 크게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숫자 0은 다른 표시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꺼짐 위치의 표시와 혼동할 수 없게 배치되어 다른 숫자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기기의 설치시 또는 통상 사용시에 조정하는 제어장치는 조정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진공청소기	모발건조기	전기물끓이기	손건조기
물흡입청소기	전기머리인두	전기약탕기	전기건조기
전기바닥청소기	모발말개	커피메이커	의류관리기
전기표면세척기	주 서	전기시스템쿠커	전기스토브
스팀청소기	주서믹서기	달걀조리기	전열보드
스팀해빙기	후드믹서	우유가열기	전기라디에이터
고압세척기	전기녹즙기	젖병가열기	전기온풍기
전기건조다리미	크림가품기	요구르트제조기	축열식 전기난방기
스팀다리미	계란반죽기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	전구모양 히터
바지 프레스기	혼합기	기기	펠릿 스토브
주름펴기	버터제조기	전기요	전기마사지기
다림질 프레스	압줍기	전기매트	냉방기
전기레인지	슬라이스기	전기카펫	전격살충기
전기오븐기기	전기킬갈이	전기장판	선풍기
전기거치식그릴	전기깡통따개	전기침대	송풍기
전기호브	전기칼	전기방석	환풍기
전기곤로	커피분쇄기	전기찜질기	레인지후드
전기가열기	빙삭기	발보온기	전기냉풍기
전기토스터	전기고기갈개	전기온수기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
전기프라이팬	전기국수제조기	순간온수기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전기휴대형그릴	전기육젓기	전기냉장·냉동기기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전기고기구이기	전기골절기	제빙기	전기변좌
와플기기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아이스크림 프리저	오물흡입기
핫플레이트	전기밥솥	전기냉수기	가습기
전기세탁기	전기보온밥솥	전자레인지	기타 전기기기
전기탈수기	전기주전자	전기총전기	
일체형 세탁·건조기	전기냄비	회전형 전기건조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부 :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6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9부 : 파워 브러시가 부착된 공업용 및 상업용 건식·습식 전기진공청소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모터에 의한 공기흡입으로 이물질을 빨아 들여 청소하는 기기

표시사항



XXXXXXXXXXXXXX

· 제품명 : 진공청소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사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진공청소기

(1) 기기에 콘센트가 있는 경우

- 정격 입력과 기기 콘센트 최대 부하의 합을 표시
- 부속품용 기기 콘센트에는 최대 부하(W)를 표시

(2) 전동식 청소헤드가 있는 경우 하기 표시

- 정격 전압 또는 정격 전압 범위(V)
- 성격 입력(W)
- 제조사 또는 책임공급자의 이름, 상표 또는 식별 표시
- 모델명이나 형식명

(3) 동물용 제품표지 4

◆ 진공청소기(상업용)

- 제조업체의 업종 명칭 및 주소 및 해당 시, 정식 담당자. 특정 주소는 우편 번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 해당 시, 일련 번호

- 제품을 기술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기기 명칭 및 시리즈 또는 종류

- 제조연도. 이는 제조 공정이 완료된 연도.

- 바퀴 및 기타 이동식 기기의 장착된 기기는 가장 일반적 구성의 부피를 kg으로 표시

(1) 전동 청소 헤드

다음 시항을 표시해야 한다.

- 정격 전압 또는 정격 전압 범위를 volt 단위로 표시

- 정격 입력 전원을 watt 단위로 표시

- 제조사 또는 해당 공급 업체의 상호, 상표 또는 식별 표시

- 모델 또는 종류 칭호 정보

- 가장 일반적 구성의 부피를 kg으로 표시

(2) 작동 전압이 최대 24V인 III종 구조를 제외한 물 흡입 청소기의 전동 청소 헤드

- 기호 IEC 60417-5935 (2002-10)를 표시

(3) 부속품의 소켓 콘센트

- 소켓 콘센트 표면 또는 인접한 위치에 최대 부하를 watt로 표시

(4) 물흡입 기기 IPX4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 KC 60335-2-69 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고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격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물흡입청소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부 :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모터에 의한 물기를 흡입함으로써 이물질을 빨아 들여 청소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물흡입청소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IPX4

(1) 기기에 콘센트가 있는 경우

- 정격 입력과 기기 콘센트 최대 부하의 합을 표시
- 부속품용 기기 콘센트에는 최대 부하(W)를 표시

(2) 전동식 청소헤드가 있는 경우 하기 표시

- 정격 전압 또는 정격 전압 범위(V)
- 정격 입력(W)
- 제조자 또는 책임공급자의 이름, 상표 또는 식별 표시
- 모델명이나 형식명

(3) 물흡입 청소를 위한 전동식 청소헤드가 있을 경우 기호(IEC60417 - 5935(2002 - 10) 기호의 높이는 최소 15 mm)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부 : 마루 청소기 및 물걸레 청소기의 개별 요구 사항

KC 60335-2-6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7부 :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청소기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7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2부 :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자동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광택을 내거나 물걸레 청소 혹은 융단의 세탁 등과 같이 마루나 바닥청소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표시사항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바닥청소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바닥청소기(가정용) (표시사항 내용 없음)

◆ 전기바닥청소기(상업용)

(1) 모터구동용 청소 헤드가 있는 경우 하기 내용 표시

- 정격전압 또는 정격전압범위를 V로 표기

- 정격소비전력을 W로 표기

- 제조자 또는 책임자의 이름, 상표 혹은 식별 표시

- 모델이나 형식

(2) 24V 이하의 동작전압을 가지는 3종 구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물흡입 청소기에 관한 전동기 구동형 청소용 헤드가 있는 경우 - IEC 60417-5935 기호를 표시

(3) 추가 부속을 위한 기기 콘센트가 있는 경우 - 최대 부하(W) 표시

3. 주로 실내용을 위해 공급되어 건조 청소용만으로 의도된 기기 이외 제품

- IPX(4)

◆ 전기바닥청소기

- 일련번호 표시와 제조연도

- 기기가 100 kg이 넘는 경우 기기의 전체중량(단위 : kg)

- KS C IEC 60335-2-69의 부속서 AA에 따른 유해 먼지 흡입 용량에 관한 참고사항

- 유해먼지 흡입이 가능한 기기인 경우 "유해 먼지 흡입용"이라는 문구

- 최소 2가 되는 X의 값과 함께 운전 최대 경사도를 지시하는 심벌

(2) 모터 달린 청소기 헤드는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정격전압 또는 정격전압

범위

- 정격입력

- 이름, 상표 또는 제조자나 책임 있는 판매자의 식별표시

- 모델 또는 형식

(3) 동작전압 24V를 넘는 3종 구조의 기기를 제외한 물 흡입 청소기를 위한 모터 달린 청소기 헤드 - IEC 60417-5935의 심벌을 표시

(4) 부속품을 위한 이웃레이 있는 경우

- 외트로 최대 부하를 표시

(5) 주전원과 배터리에 의해 동력이 공급되는 건식 세척 전용 실내용 기기 이외 제품

- IPX3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0, KC 60335-2-67, KC 60335-2-72

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고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격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5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4부 : 액체 또는 증기 사용 가정용 표면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 및 전열장치를 이용하여 액체 또는 증기를 분사하여 창(유리), 벽(타일), 바닥 등의 표면을 청소(세척)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표면세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표면세척기

- IPX4

- (1) 액체를 분배하는 1 종 및 2 종 수지형 기기

- IPX7

- (2) 급수 주관에 연결하도록 만들어진 기기

- 최대 허용 수압(Mpa)을 표기

- (3) 온도가 50 °C 를 초과하는 스팀 청소기, 벽지 제거기 및 액체 분배 기기

- 기호 IEC 60417-5597 (2002-10) 또는

- 경고 : 데일 위험이 있음 문구 표기

- (4) 부속품의 기기 출구가 있는 경우

- 그 최대 부하(W)를 표기

- 정격 입력 전력과 기기 출구의 최대 부하의 합을 기기에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스팀청소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5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4부 : 액체 또는 증기사용 가정용 표면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열장치를 이용, 증기를 분사하여 바닥 등의 표면을 청소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스팀청소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스팀청소기

- IPX4
- (1) 액체를 분배하는 1 종 및 2 종 수지형 기기
- IPX7
- (2) 급수 주관에 연결하도록 만들어진 기기
- 최대 허용 수압(Mpa)을 표기
- (3) 온도가 50°C를 초과하는 스팀 청소기, 벽지 제거기 및 액체 분배 기기
- 기호 IEC 60417-5597 (2002-10) 또는 경고 : 데일 위험이 있음 문구 표기
- (4) 부속품의 기기 출구가 있는 경우
 - 그 최대 부하(W)를 표기
 - 정격 입력 전력과 기기 출구의 최대 부하의 합을 기기에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스팀해빙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5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4부 : 액체 또는 증기 사용 가정용 표면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열장치를 이용, 스팀을 분사하여 해빙시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스팀해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스팀해빙기

- IPX4
- (1) 액체를 분배하는 1 종 및 2 종 수지형 기기
- IPX7
- (2) 급수 주관에 연결하도록 만들어진 기기
- 최대 허용 수압(Mpa)을 표기
- (3) 온도가 50°C를 초과하는 스팀 청소기, 벽지 제거기 및 액체 분배 기기
- 기호 IEC 60417-5597 (2002-10) 또는 경고: 데일 위험이 있음 문구 표기
- (4) 부속품의 기기 출구가 있는 경우
 - 그 최대 부하(W)를 표기
 - 정격 입력 전력과 기기 출구의 최대부하의 합을 기기에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고압세척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7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9부 : 산업용과 상업용의 고압 청소기와 증기 청소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열장치를 이용, 증기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표면을 청소하기 위한 기기이며, 정격입력 3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고압세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고압세척기

- 제조업체의 업종 명칭 및 주소 및 해당 시, 정식 담당자. 주소는 우편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정도로 명확해야 함.
- 해당 시, 일련 번호
- 제품을 기술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기기 명칭 및 시리즈 또는 종류.
- 제조연도(제조 공정이 완료된 연도)
- 정격 압력(pascal 단위)
- 해온 압력(pascal 단위)
- 정격 유량(분당 리터 단위)
- 최대 유량(분당 리터 단위), 유량 표시의 수는 2개소로 제한한다.
- 50 °C를 초과할 경우 최대 정격 온도.
- 해당 시 온수기의 최대 전원(kW 단위)
- 기기 유형에 맞는 IPX등급 표기
- (1) 바퀴나 기타 이동식 장치가 장착된 기기
- 가장 유출한 구성의 부피를 kg으로 표시
- (2) 히터 가스 배출을 위한 플루 또는 드렉트 표면의 온도 상승이 60K를 초과할 경우 경고 뜨거움, 만지지 말 것.
- (3) 스팀 청소기
- 기호 IEC 60417-5597(2002-10) 표시
- (4) 흡대용 급수 본관에 연결되지 않는 기기
- 그림 1040에 따른 기호로 표시
- (5) 유통으로, LPG 구동 엔진을 제외한, 내부 연소 엔진으로 구동되는 기기의 경우
- 그림 105에 따른 기호로 표시
- (6) 모든 고압 호ース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압력은 파스칼 또는 바 단위의 최소 허용 압력.
- 썬서 온도 단위의 최대 온도
- 흡수 제조사의 업종 이름 및 생산 날짜
- (7) 모든 고압 부속품들이 견, 분사기 렌즈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 최소한 허용 압력을 파악할 또는 바로 표시
- 최대 온도(썬서 온도 기준)
- (8) 전동 청소 헤드는 다음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 정격 전원 또는 정격 전압의 범위가 Volt 단위로 표시
- 정격 소비전력이 Watt 단위로 표시
- 제조자 또는 도매상의 상호, 상표 또는 식별 표시
- 모델 또는 종류 첨조
- (9) 3종 구조를 제외한 물 흡입 청소기용 모터 구동 세척 헤드
- 동작 전압이 최대 24 V 리는 것을 IEC 60417-5935(2002-10)에 맞추어 표시
- (10) 부속품 소켓 컨센트
- 소켓 컨센트 또는 접촉한 곳에 와트 단위의 최대 부하를 표시
- (11) 부속품을 위한 전원 어댑터
- 최대 부하를 Watt 단위로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7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는 공정으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고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전기건조다리미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부 : 전기 다리미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주로 시이즈식 전열장치로부터 발생된 열로 가열시킨 가열 판을 이용하여 옷 등의 직물류를 놀려 다리는 것으로서 보통은 직물류에 따라 온도설정이 가능토록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음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다리미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다리미

- (1) 개별 받침대 표시사항
 - 명칭, 상표, 제조사 또는 책임 판매사의 식별 표시
받침대의 모델이나 타입
- (2) 무선 다리미 받침대 표시사항
 - 정격 전압 또는 정격 전압 범위 정격 입력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스팀다리미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부 : 전기 다리미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주로 시이즈식 전열장치로부터 발생된 열로 가열시킨 가열 판을 이용하여 옷 등의 직물류를 놀려 다리는 것으로서 보통은 직물류에 따라 온도설정이 가능토록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스팀을 분사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스팀다리미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스팀다리미

- (1) 개별 받침대 표시사항
 - 명칭, 상표, 제조사 또는 책임 판매사의 식별 표시 모델이나 타입
- (2) 무선 다리미 받침대 표시사항
 - 정격 전압 또는 정격 전압 범위 정격 입력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바지 프레스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4부 : 전기 주름 폐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바지 세탁물을 가열판이나 회전하는 롤러를 이용하여 주름을 폴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바지 프레스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교환할 수 있는 일반 조명용 램프의 최대 입력

◆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기기는 MPa로 최대 기압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4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주름펴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4부 : 전기 주름펴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직물 표면에 증기를 직접 가하여 의복이나 직물로부터 주름을 제거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주름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극식 기기는 정격 입력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4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다림질 프레스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4부 : 전기 주름 폐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직물 표면에 가열판 등을 이용, 압력을 가하여 의복이나 직물로부터 주름을 제거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다림질 프레스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교환할 수 있는 일반 조명용 램프의 최대 입력

◆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기기는 MPa로 최대 기압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4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레인지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곤로와 전기오븐 또는 전기토스트의 기능을 겸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레인지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오븐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밀폐된 용기 내에 발열체를 갖고 있는 기구로서 발열체에 의한 복사열 및 대류열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오븐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오븐기기(휴대형)**
기기에 접근 가능한 표면이 있는 경우 “주의 : 표면 뜨거움”
- ◆ **전기오븐기기(거치형)**
- ◆ **전기오븐기기(상업용)**
 - 통상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IPX3이상
 - 그 밖의 기기는 IPX4이상
 - (1) 사용설명서에 표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있는 기기에 대한 수압 또는 압력 범위(단위: kPa)
 - (2) 250V를 초과하는 동작전압의 충전부에 접근이 가능한 덮개가 있을 경우
 - 덮개에 위험전압 또는 위험전압은 나타내는 기호(KS X IEC 60417-1의 기호 5036)를 표시해야 한다.
- ◆ **전기오븐기기(상업용 강제 대류식, 스팀형)**
 - 통상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IPX3이상
 - 그 밖의 기기는 IPX4이상
 - (1) 사용설명서에 표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있는 기기 또는 스팀 발생기에 대한 수압 또는 압력 범위(단위: kPa)
 - 기기의 압력부에 대한 정격 압력(단위: kPa)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의 7항과 KC 60335-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거치식그릴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식품을 격자 또는 꼬치로 지지해서 방사열로 조리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거치식그릴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거치식그릴(상업용)

- 통상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IPX3이상
- 그 밖의 기기는 IPX4이상
- (1) 사용설명서에 표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있는 기기에 대한 수압 또는 압력 범위(단위: kPa)
- (2) 250V를 초과하는 동작전압의 충전부에 접근이 가능한 덮개가 있을 경우
 - 덮개에 위험전압 또는 위험전압은 나타내는 기호(KS X IEC 60417-1의 기호 5036)를 표시해야 한다.
- 통상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IPX3이상
- 그 밖의 기기는 IPX4이상
-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있는 기기에 대한 수압 또는 압력 범위(단위: kPa)
- 통상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IPX3이상
- 그 밖의 기기는 IPX4이상
- 수도관 직결식 기기인 경우 설명서에 나타나있지 않으면 수압이나 압력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단위: kPa)
- 청소시 부분적으로 물에 담그는 기기는 최대 침수 레벨 및 다음의 내용은 표시해야 한다. '이 레벨은 초과하여 침수하지 마시오.' - IPX4 이상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호브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호브면 및 하나 이상의 호브 소자를 갖춘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호브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곤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3부 : 전기 튀김기, 전기 프라이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프라이팬 등을 가열할 수 있는 전열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곤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가열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독립적인 조리나 보온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가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60335-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토스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얇게 썰은 식빵을 굽기 위한 전열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토스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기기에 접근 가능한 표면이 있는 경우 “주의 : 표면 뜨거움”

- 통상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IPX3이상

- 그 밖의 기기는 IPX4이상

- 수도관 직결식 기기인 경우 설명서에 나타나있지 않으면 수압이나 압력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단위: kPa)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60335-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프라이팬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3부 : 전기 튀김기, 전기 프라이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접시형상 또는 냄비 형상의 용기를 갖고 조리를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프라이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개별 규격에서 요구하는 추가 표시사항 없음

- 수도에 연결하도록 설계된 기기, 수압 또는 압력 범위.
- 사용설명서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기기의 가압 부품에 대한 정격압력(단위:kPa)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휴대형그릴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에 위한 복사열 및 대류열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전열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휴대형그릴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휴대형그릴

- (1) 세척 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인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수위를 표시하고 표시된 수위 이상을 물에 담그지 말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 (2) 기기에 접근 가능한 표면이 있으며 표102의 온도 규제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 표102의 각주 b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색상을 제외하고 ISO 3864-1의 규정을 적용한 IEC60417-5041(2002-10)의 심벌을 기기에 표기하거나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의: 표면 뜨거움.'
- (3) 옥외용 기기일 경우
 - IPX4 이상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60335-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고기구이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고기를 조리할 수 있는 전열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고기구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청소시 부분적으로 물에 담그는 기기는 최대 침수 레벨 및 다음의 내용은 표시해야 한다. 이 레벨은 초과하여 침수하지 마시오.'

◆ IPX4 이상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60335-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와플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부: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반죽을 담기 위한 형상을 한 기기로 두 개의 가열된 경첩 판을 포함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와플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60335-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핫플레이트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상판 평면에 하나 이상의 조리할 수 있는 발열부를 가지는 전열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핫플레이트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유도호브소자를 지닌 기기

- 우도호브소자의 총 정격입력전류 또는 정격전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 핫플레이트가 조리레인지의 일부일 경우

- D형 뮤즈를 제외하고 조리레인지가 뮤즈로 소켓콘센트를 보호하도록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뮤즈의 정격전류를 표시해야 한다. 소형 뮤즈링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에 뮤즈링크가 가지고 있는 최대 차단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 인덕션 방식 핫플레이트(복합기기인 경우)

- 입력 전력이나 전류를 추가 표기해야 한다.

◆ 세척 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인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수위를 표시하고 표시된 수위 이상을 물에 담그지 말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 기기에 접근 가능한 표면이 있으며 표102의 온도 규제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 표102의 각주 b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색상을 제외하고 ISO 3864-1의 규정을 적용하는 IEC60417- 5041(2002-10)의 심벌을 기기에 표기하거나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의: 표면 뜨거움.'

◆ 옥외용 기기일 경우 : IPX4 이상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의 7항과 KC 60335-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기세탁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부 : 세탁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옷과 옷감의 세탁을 위한 목적의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세탁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표준 세탁 용량(kg)과 세탁조의 용적(L)
- ◆ IPX4
- ◆ 자동 수위 조절이 없는 기기
 - 최대 수위를 표시
- ◆ 온수에 연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고 전열소자가 없는 기기
 - 주의 : 온수에 연결하지 마시오
- ◆ 드럼세탁기 안전사고(감힘) 방지를 위한 아래와 같은 경고문 구나 도안을 제품 전면의 보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예) 어린이가 세탁기에 들어가면 안전사고(감힘)가 발생하므로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기탈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부 : 전기 탈수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회전용 드럼을 가지고 원심력으로 의류 등의 물을 짜내는 것으로서 탈수기 전용의 것이 있으나 세탁기에 내장되어 탈수기 기능을 하는 겸용 제품이 주를 이룸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탈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스위치의 깨짐 위치가 문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단어 "깨짐"을 사용

◆ IPX4

◆ 아파트 단지에서 상업용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으며 덮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통전시켜야 하는 연동장치가 있는 기기는 사용설명을 기기에 표기하지 않는 한 다음의 내용을 명시한 라벨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이 회전탈수기는 덮개를 열 수 있기 전에 전원에 접속하여야 한다. 무리한 힘을 가해 열지 않는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일체형 세탁·건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1부 :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회전용 드럼을 가지고 원심력으로 의류 등의 물을 짜내는 것으로서 탈수기 전용의 것이 있으나 세탁기에 내장되어 탈수기 기능을 하는 겸용 제품이 주를 이룸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일체형 세탁·건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호 ISO 7000-0790 (2004-01) 또는 다음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를 참조할 것.”
- ◆ IPX4
- ◆ 고정형 기기 이외의 기기 뒷면에는 온도 상승이 사람이 닿을 수 있는 앞면에 대해 11.8에 규정된 한계를 초과한다면 기호 IEC 60417-5041(2002-10) 또는 “표면이 뜨거워 주의할 것” 표기
- ◆ 스위치의 깨짐 위치가 문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단어 “깨짐”을 사용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모발관리기]

모발건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람 또는 동물의 모발을 손질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모발건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경고 : 이 기기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 것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모발관리기]

전기머리인두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모발을 손질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머리인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경고 : 이 기기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 것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모발관리기]

모발말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모발을 말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모발말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경고 : 이 기기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 것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주 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과일 등의 재료를 찌꺼기(residue)와 주스(juice)로 분리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주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주서(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주서(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꺼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주서믹서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과일 등의 재료를 찌꺼기(residue)와 주스(juice)로 분리 및 혼합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주서믹서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주서믹서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주서믹서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꺼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후드믹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음식 재료를 혼합(mixing)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후드믹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후드믹서(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후드믹서(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전기녹즙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기계적 압착을 이용하여 야채의 족을 얻어 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녹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녹즙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전기녹즙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꺼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크림거품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크림의 거품을 얻어 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크림거품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크림거품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밤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크림거품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계란반죽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계란을 반죽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계란반죽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계란반죽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계란반죽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혼합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과일 등의 식재료를 혼합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혼합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혼합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혼합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버터제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버터를 제조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버터제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버터제조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버터제조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
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압축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압착하여 즙을 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압축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압축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압축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
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슬라이스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식재료 등을 얇게 썰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슬라이스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슬라이스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슬라이스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꺼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전기칼갈이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칼을 갈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칼갈이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칼갈이(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전기칼갈이(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전기깡통따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깡통을 딸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깡통따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깡통따개(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전기깡통따개(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여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
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전기칼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를 이용하여 사용되는 칼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칼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칼(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전기칼(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커피분쇄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커피를 분쇄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커피분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커피분쇄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커피분쇄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꺼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빙삭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얼음을 잘게 갈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빙삭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빙삭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빙삭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전기고기갈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고기 등의 음식물을 잘게 자르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고기갈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고기갈개(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전기고기갈개(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전기국수제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국수의 면을 만들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국수제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국수제조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전기국수제조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꺼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전기육절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고기를 원하는 크기 만큼 자르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육절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육절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전기육절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전기골절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뼈를 원하는 크기 만큼 자르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골절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골절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전기골절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 전동 기기)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
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밥솥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히터에 의한 액체의 가열 및 음식을 가열하는데 사용되는 기기(압력용기 등이 내장되어 있는 압력 조리기기도 있음)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밥솥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압력 조리기기의 경우

뚜껑이 닫힌 상태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뚜껑이 닫혔을 때의 올바른 위치를 기기에 표시해야 한다.

◆ 전기압력솥의 경우

정격압력
제품명에 압력식임을 명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보온밥솥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열부를 이용하여 액체 및 음식을 가열하고 보온하는데 사용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보온밥솥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압력 조리기기의 경우

뚜껑이 닫힌 상태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뚜껑이 닫혔을 때의 올바른 위치를 기기에 표시해야 한다.

◆ 전기압력솥의 경우

정격압력
제품명에 압력식임을 명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주전자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열부를 이용한 주전자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

- 제품명 : 전기주전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정격용량을 초과하여 주전자를 채울 수 없는 경우
 - 통상 사용시 볼 수 있는 수위표시나 그 밖의 수단
- ◆ 무전 주전자 전용 받침대
 - 제품명, 상표 또는 제조사나 책임 판매 업체의 식별표시 모델 또는 종류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냄비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열부를 이용한 냄비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냄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수도에 접속하는 기기에 대하여는 수압 또는 수압의 범위를 kPa로 표시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물끓이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열부를 이용하여 액체를 끓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물끓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약탕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약재를 이용 탕을 만들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약탕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커피메이커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물 또는 증기압에 의해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제조기

표시사항



XXXXXXXXXXXXXX

· 제품명 : 커피메이커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커피메이커

- (1)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2)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 권장안전사용기간

◆ 커피메이커(상업용)

- (1)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2) 물 분사 사용 및 세척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3) 기기의 정격압력(단위 : MPa)
- (4)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기기인 경우, 최대허용수압 (단위 : MPa)
- (5) 수동으로 물 채우는 기기: 수위표시 또는 청각이나 시각적 인 방법으로 표시
- (6)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7) 기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물에 담그게 되는 기기: 최대허용수위 표시 및 “표시된 수위 이상 물에 담그지 마시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스팀쿠커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증기압에 의하여 요리를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스팀쿠커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달걀조리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달걀을 조리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달걀조리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우유가열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우유 및 액체를 가열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우유가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젖병가열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미리 결정된 온도로 물을 통하여 아기 젖병을 가열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젖병가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요구르트제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요구르트제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증기압에 의하여 요리를 할 수 있는 기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담요, 매트, 전기침대]

전기요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용자가 밑에 깔고 사용하는 담요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요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속독하시오
- 편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어의 사용 금지
- 담요와 매트리스의 방향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전기요에는 (PTC발열소자 제외)

-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 것
- 분리할 수 있는 커버에는 ISO 7000-0790

◆ 담요와 분리할 수 있는 커버

- 명시한 세탁 기호
- 손세탁 가능
- 세탁하지 말 것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담요, 매트, 전기침대]

전기매트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내부에 발열체를 포함한 유연부로 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매트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숙독하시오
 - 편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어의 사용 금지
 - 담요와 매트리스의 방향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 전기요에는 (PTC발열소자 제외)
 -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 것
 - 분리할 수 있는 커버에는 ISO 7000-0790
- ◆ 담요와 분리할 수 있는 커버
 - 명시한 세탁 기호
 - 손세탁 가능
 - 세탁하지 말 것
-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담요, 매트, 전기침대]

전기카펫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거실이나 넓은 방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발열체를 포함한 유연성 있는 용 재질의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카펫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숙독하시오
- 편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어의 사용 금지
- 담요와 매트리스의 방향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전기요에는 (PTC발열소자 제외)

-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 것
- 분리할 수 있는 커버에는 ISO 7000-0790

◆ 담요와 분리할 수 있는 커버

- 명시한 세탁 기호
- 손세탁 가능
- 세탁하지 말 것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담요, 매트, 전기침대]

전기장판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용자가 밑에 깔고 사용하는 유연성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장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숙독하시오
- 핀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어의 사용 금지
- 담요와 매트리스의 방향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전기요에는 (PTC발열소자 제외)

-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 것
- 분리할 수 있는 커버에는 ISO 7000-0790

◆ 담요와 분리할 수 있는 커버

- 명시한 세탁 기호
- 손세탁 가능
- 세탁하지 말 것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담요, 매트, 전기침대]

전기침대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 1000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침대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기기 안에 전열소자가 있고 그 위의 표면이 돌판 또는 침대형태를 가진 절연체로 덮여 있는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침대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설명서를 읽으시오
- ◆ 보료에 핀을 꽂아 넣지 마시오
- ◆ 젖은 채로 사용하지 마시오
- ◆ 신체 부자유자나 유아 또는 열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마시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0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방석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한면이 0.3 m² 이하의 발열 면적을 갖는 유연부로 구성되어 인체의 일부를 가열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방석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숙독하시오
- 편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어의 사용 금지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K 1002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찜질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신체에 접촉하여 일부분에 온열을 가함으로써 신체 일부분을 따뜻하게 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찜질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숙독하시오
- 핀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아의 사용 금지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경고 : 온열에 의한 화상 위험

- ◆ 기기 사용 시, 당뇨환자, 피부질환을 앓는 사람,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화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를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 예) 사용자의 열에 대한 민감 정도에 따라 온열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과 K 1002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발보온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1부 : 발 보온기 및 발 보온매트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용자의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발에 신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인증]

- 제품명 : 발보온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전에 외출용 신발을 벗어라.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온수기]

전기온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1부 : 전기 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물을 시이즈 히터 등의 발열체를 사용해서 가열하여 보온탱크 내에 저장하는 전열기기로서 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온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압력 표시(파스칼 단위(bar))(물통형 전기 온수기 제외)
- ◆ 정격 용량 표시(리터: L)
- ◆ 물의 입구와 출구 식별(청색은 입구, 적색은 출구)
 - (1) 실외용인 경우: IPX4
 - (2) 기타 전기온수기인 경우: IPX1
 - (3) 밀폐형 전기 온수기인 경우: 기기 자체 김압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기 설치 때 부착해야 한다는 표시
 - (4) 0.6 Mpa보다 작은 정격을 가진 밀폐형 전기 온수기인 경우: 설치 때 김압 밸브 장착해야 한다는 표시
 - (5) 저압 전기 온수기인 경우: 설치 때 김압 밸브 장착해야 한다는 표시
 - (6) 출구 개방형 전기온수기인 경우: 배출구 접속 부분 근처나 기기에 부착된 꼬리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의사항을 표시 “경고 이 배출구는 통기구 역할을 하며 제조자 권유대로 적합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꼭지에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순간온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5부 : 순간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탕비기라고도 하며 수도 배관 등에 연결하여 물이 기기를 통해서 흐를 때 히터 등의 전열장치를 이용하여 물을 순간 가열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순간온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순간온수기

- IPX1
- 정격 압력 표시(파스칼 단위(bar))
- 물의 입구와 출구는 식별(청색은 입구, 적색은 출구)
- (1) 노출 밸브체 온수기인 경우
 -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내수성을 표시하고 표시된 값은 1 300 Ωcm이하여야 한다.
- (2) 1종 노출 밸브체 온수기인 경우
 - 기기가 접지되어야 한다는 문구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냉장·냉동기기]

전기냉장·냉동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 사항

KC 60335-2-8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9부 : 내장형 또는 원격 냉각 압축기를 가진 상업용 냉동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냉매의 증발열을 이용한 기기로서 주로 콤프레셔, 반도체 냉각방식으로 구동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인증

- 제품명 : 전기냉장·냉동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A(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가정용 기기

- 기후등급
- 램프의 최대 정격 와트(램프가 기기 부품과 함께 제조자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밸포제 주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1) 전동압축기 탑재 기기의 경우
 - 정격전류(A)로만 표기(아이스크림 기기 제외)
 -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2) 그 이외의 기기 경우
 - 정격 전력(W) 혹은 정격 전류(A)로 표기
 - 제상 히터 전력이 기기의 정격 입력 전력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3) 가열 시스템 전력(W)이 100 W보다 큰 경우
 - 가열 시스템 전력(W) 표기
- (4) 내장형 제빙기이면서 전력이 100 W가 넘는 경우
 - 제빙기 최대 입력전력(W) 표기

◆ 상업용 기기

- 정격 전류(A)로 표기
- 기후등급
- 별도의 냉매회로 각각에 대한 냉매의 총질량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밸포제 주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1) 전열장치의 입력전력(W) 이 100 W를 초과할 경우
 - 전열장치 입력전력(W) 표기
- (2)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3) 백열등 사용의 경우 - 램프의 최대 정격 전력(W)
- (4) 방전램프 사용의 경우 - 램프의 정격 전력(W)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행과 KC 60335-2-24, KC 60335-2-89의 7행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얼음을 만드는 기계이며, 3 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제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A(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가정용 기기

- 기후등급
- 램프의 최대 정격 와트(램프가 기기 부품과 함께 제조자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발포제 주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1) 전동압축기 타입 기기의 경우
 - 정격전류(A)로만 표기(아이스크림 기기 제외)
 -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2) 그 이외의 기기 경우
 - 제상 히터 전력이 기기의 정격 입력 전력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3) 가열 시스템 전력(W)이 100 W보다 클 경우
 - 가열 시스템 전력(W) 표기
- (4) 내장형 제빙기이면서 전력이 100 W가 넘는 경우
 - 제빙기 최대 입력전력(W) 표기

◆ 상업용 기기

- 정격 전류(A)로 표기
- 기후등급
- 별도의 냉매회로 각각에 대한 냉매의 총질량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발포제 주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1) 전열장치의 입력전력(W) 이 100 W를 초과할 경우
 - 전열장치 입력전력(W) 표기
- (2)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3) 백열등 사용의 경우 - 램프의 최대 정격 전력(W)
- (4) 방전램프 사용의 경우 - 램프의 정격 전력(W)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4 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냉장·냉동기기]

아이스크림 프리저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 압축기를 이용하여 고압의 냉매가스를 열교환기(증발기)에서 저압으로 증발하여 냉각시키는 방식을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제조에 사용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아이스크림 프리저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A(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가정용 기기

- 기후등급
- 램프의 최대 정격 와트(램프가 기기 부품과 함께 제조자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밸포제 주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1) 전동압축기 타입 기기의 경우
 - 정격전류(A)로만 표기(아이스크림 기기 제외)
 -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2) 그 이외의 기기 경우
 - 제상 히터 전력이 기기의 정격 입력 전력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3) 가열 시스템 전력(W)이 100 W보다 클 경우
 - 가열 시스템 전력(W) 표기
- (4) 내장형 제빙기이면서 전력이 100 W가 넘는 경우
 - 제빙기 최대 입력전력(W) 표기

◆ 상업용 기기

- 정격 전류(A)로 표기
- 기후등급
- 별도의 냉매회로 각각에 대한 냉매의 총질량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밸포제 주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1) 전열장치의 입력전력(W) 이 100 W를 초과할 경우
 - 전열장치 입력전력(W) 표기
- (2)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3) 백열등 사용의 경우 - 램프의 최대 정격 전력(W)
- (4) 방전램프 사용의 경우 - 램프의 정격 전력(W)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4 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냉장·냉동기기]

전기냉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냉각기를 이용하여 공급된 물을 냉각시켜 냉각수로 만드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냉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A(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가정용 기기

- 기후등급
- 램프의 최대 정격 와트(램프가 기기 부품과 함께 제조자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벌포제 주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1) 전동압축기 타입 기기의 경우
 - 정격전류(A)로만 표기(아이스크림 기기 제외)
 -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2) 그 이외의 기기 경우
 - 제상 히터 전력이 기기의 정격 입력 전력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3) 가열 시스템 전력(W)이 100 W보다 클 경우
 - 가열 시스템 전력(W) 표기
- (4) 내장형 제빙기이면서 전력이 100 W가 넘는 경우
 - 제빙기 최대 입력전력(W) 표기

◆ 상업용 기기

- 정격 전류(A)로 표기
- 기후등급
- 별도의 냉매회로 각각에 대한 냉매의 총질량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벌포제 주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1) 전열장치의 입력전력(W)이 100 W를 초과할 경우
 - 전열장치 입력전력(W) 표기
- (2)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3) 백열등 사용의 경우 - 램프의 최대 정격 전력(W)
- (4) 방전램프 사용의 경우 - 램프의 정격 전력(W)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5부 : 전자레인지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음식물을 마이크로파라고 불리는 고주파의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기기이며, 300 MHz~30 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자레인지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자레인지

- 기기에는 기기가 동작하는 ISM 대역의 공칭 주파수(MHz)를 표시해야 한다.

(1) 어떤 단계를 제거했을 때 3.2에 규정한 수치를 초과하는 극초단파 누설이 생기는 경우

- 다음 내용의 문구가 단계에 표기되어야 한다. '경고: 극초단파 에너지이 단계를 제거하지 말 것.'

(2) 전자레인지가 조리호브의 일부일 경우

D형 뮤즈 이외의 뮤즈로 보호된 콘센트가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뮤즈의 정격 전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형 뮤즈 링크가 제공된 경우에는 이 표시에 뮤즈 링크가 큰 차단 용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 전자레인지(상업용)

- 기기에는 기기가 동작하는 ISM 대역의 공칭 주파수(MHz)를 표시해야 한다.

(1) 어떤 단계를 제거했을 때 3.2에 규정한 수치를 초과하는 극초단파 누설이 생기는 경우

- 다음 내용의 문구가 단계에 표기되어야 한다. '경고: 극초단파 에너지이 단계를 제거하지 말 것.'

(2) 전자레인지가 조리호브의 일부일 경우

D형 뮤즈 이외의 뮤즈로 보호된 콘센트가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뮤즈의 정격 전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형 뮤즈 링크가 제공된 경우에는 이 표시에 뮤즈 링크가 큰 차단 용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3) 기기에 작업 표면 외에 달을 수 있고 그 온도 상승이 11의 시험 중에 90 K를 초과하는 금속 표면이 있는 경우, 이 금속 표면에는 기호 IEC 60417-5041 (2002-10) 또는 다음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주의: 표면 뜨거움.'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충전기]

전기충전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9부 :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연축전지 및 니켈-카드뮴 배터리 등을 충전하기 위하여 교류전원을 직류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충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격입력 : AC 220 V 60 Hz 10 mA
- 정격출력 : DC 5.0 V 500 m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출력 단자의 극성 기호

◆ 정격 출력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초과 250 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건조기]

회전형 전기건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1부 :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뜨거운 공기나 냉각된 공기를 이용하여 섬유물질을 건조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회전형 전기건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호 ISO 7000-0790 (2004-01) 또는 다음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를 참조할 것.”
- ◆ IPX4
- ◆ 고정형 기기 이외의 기기 뒷면에는 온도 상승이 사람이 닿을 수 있는 앞면에 대해 11.8에 규정된 한계를 초과한다면 기호 IEC 60417-5041(2002-10) 또는 “표면이 뜨거워 주의할 것” 표기
- ◆ 스위치의 깨짐 위치가 문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단어 “깨짐”을 사용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참고사항

- 순,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건조기]

손건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를 이용해 젖은 손을 말리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손건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IPX1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순,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건조기]

전기건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3부 : 의류 건조기 및 타월걸이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FAN과 히터를 이용해 기기 내부의 의류 및 타월 등을 건조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인증]

- 제품명 : 전기건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IPX1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4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순,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건조기]

의류관리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3부 : 의류 건조기 및 타월걸이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FAN과 히터를 이용해 기기 내부의 의류 및 타월 등을 관리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의류관리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IPX1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4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전기스토브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 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히터를 이용해 방사된 열로 난방을 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스토브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용자가 액체를 채우는 난방기는 액체의 최대 및 최소 레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 ◆ 난방기는 KS S ISO 3864-1의 금지 표시(규정된 색상은 제외)와 결합시키거나 또는 아래 문장과 같이 IEC 60417-5641(2002-10)의 기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 ◆ 수송이나 보관시에 떼어낼 수 있도록 한 방화 안전망을 가지는 난방기는 “방화안전망”이 없으면 동작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난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 ◆ 온실 또는 건축 현장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적어도 IPX4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전열보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 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보드에 내장된 발열체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열보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용자가 액체를 채우는 난방기는 액체의 최대 및 최소 레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 ◆ 난방기는 KS S ISO 3864-1의 금지 표시(규정된 색상은 제외)와 결합시키거나 또는 아래 문장과 같이 IEC 60417-5641(2002-10)의 기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 ◆ 수송이나 보관시에 떼어낼 수 있도록 한 방화 안전망을 가지는 난방기는 “방화안전망”이 없으면 동작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난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 ◆ 온실 또는 건축 현장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적어도 IPX4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전기라디에이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히터를 이용해 주변을 따뜻하게 난방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라디에이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용자가 액체를 채우는 난방기는 액체의 최대 및 최소 레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 ◆ 난방기는 KS S ISO 3864-1의 금지 표시(규정된 색상은 제외)와 결합시키거나 또는 아래 문장과 같이 IEC 60417-5641(2002-10)의 기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 ◆ 수송이나 보관시에 떼어낼 수 있도록 한 방화 안전망을 가지는 난방기는 “방화안전망”이 없으면 동작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난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 ◆ 온실 또는 건축 현장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적어도 IPX4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전기온풍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히터와 FAN을 이용해 공기를 데워 난방을 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온풍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용자가 액체를 채우는 난방기는 액체의 최대 및 최소 레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 ◆ 난방기는 KS S ISO 3864-1의 금지 표시(규정된 색상은 제외)와 결합시키거나 또는 아래 문장과 같이 IEC 60417-5641(2002-10)의 기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 ◆ 수송이나 보관시에 떼어낼 수 있도록 한 방화 안전망을 가지는 난방기는 “방화안전망”이 없으면 동작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난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 ◆ 온실 또는 건축 현장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적어도 IPX4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축열식 전기난방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6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1부 : 축열식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고밀도의 축열재(산화마스네샤 벽돌 등)에 전기적 에너지로부터 얻어진 열을 저장한 후 임의의 시간에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축열식 전기난방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기기는 정격 축열시간(시간)과 조립된 기기의 무게(kg)을 표시하여야 한다.

◆ 난방기기는 19.의 시험 중 측정한 온도 상승이 11.에서 규정한 적절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색깔을 제외하고 KS A ISO 3864-1의 금지 표시와 결합된 IEC 60417-5641의 표시를 다음과 같은 의미의 경고 문구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위험 : 덮지마시오
1개 이상의 전원 접속장치를 가지는 난방기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전구모양 히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형상이 전구모양을 하고 있으며 전기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을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구모양 히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열 복사 기기는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 주의 : 화재 위험 또는 기호 "경고, 화재 위험/인화성 물질"
- 동물용 열 방사 기기
- 기기는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
- 안전망을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 (1) 다음 사항도 표기되어야 한다.
 - 대체 가능한 방열기의 최대 정격 : ...W
 - 방열기와 동물 또는 인화성 물질 간의 최소 거리
 - "덮지 말 것" 또는 ISO 3864-1의 금지 표지(색상 제외)와 결합된 기호 IEC 60417-5641(2002-10)
 -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또는 ISO 7000-0790

◆ 병아리 부화기 및 전기 포란기

- "덮지 말 것" 또는 ISO 3864-1의 금지 표지(색상 제외)와 결합된 기호 IEC 60417-5641 (2002-10)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정격 전압 24 V를 초과하고 인화성 물질로부터 500 mm 이하의 거리에 고정된 난방 기기

- 동물용 난방 기기
- "덮지 말 것" 또는 ISO 3864-1의 금지 표지(색상 제외)와 결합된 기호 ISO 7000-0790
- (1) 다음 사항도 표기되어야 한다.
 - 기기는 동물 또는 인화성 물질로부터 최소 고정 거리
 - 지시 사항을 숙지할 것 (또는 ISO 7000-0790).

◆ 통상 사용시 바닥 기준선에서 작동시키거나 바닥보다 500 mm 이상 높지 않은 곳에서 작동시키는 열복사 기기 이외 전열기기

- IPX7, 기타기기는 IPX4 이상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행과 KC 60335-2-30의 7행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펠릿 스토브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0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2부 : 전기를 사용하는 가스, 오일, 및 고체연료 연소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를 이용하여 전열소자로 점화하고 연료를 펠릿을 사용하는 난방기기로, 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펠릿 스토브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0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전기마사지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2부 : 전기마사지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 진동자와 같은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인체 맷사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마사지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냉방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0부 : 히트 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에어컨이라고도 하며 가정 또는 지역에 조절된 공기를 공급하는 기기로 외함 내에 완성한 조립품. 냉매시스템을 사용하여 냉방 및 제습(혹은 난방, 송풍, 공기청정, 가습을 포함)이 가능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냉방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냉매의 질량 또는 공비형 냉매를 제외한 각각의 혼합 성분의 질량
- ◆ 냉매 식별
- ◆ 냉매 회로에 관하여 흡입측 및 방출측에 대하여 각각의 허용 최대 운전 압력
- ◆ 유체의 흐름 방향 표시
 - (1) 실외용인 경우: IPX4
 - (2) 실내용(세탁실제외)인 경우: IPX0
 - (3) 세탁실에서 사용할 경우: IPX1
 - (4) 보조히터가 있을 경우: 보조 히터의 정격입력 표시
 - (5) 인화성 냉매 사용시
 - 사용설명서, 정비지침 및 설치지침을 읽어야 한다는 기호
 - 추가 경고 기호(화염기호: ISO 3864의 B.3.2)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4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전격살충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 전기 살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빛으로 해충을 유도하여 두개 이상의 격자 눈금사이에 고전압을 인가하여 유도된 해충을 감전시키는 기기이며,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함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격살충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위험 : 고압
- ◆ 대체 램프에 설치된 기기램프의 관련 형식으로 표시
- ◆ 기기를 파손하거나 파괴되지 않고는 교체할 수 없는 램프를 내장한 기기
“경고: 이 기기의 램프는 교체할 수 없다. 램프가 작동을 멈추었을 때는 기기를 폐기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팬, 레인지 후드]

선풍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의 죽에 날개를 달아 회전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선풍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기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대 기후용 팬 T자 표기
- ◆ 국소 주위온도 40 °C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동작하는 팬은 주위 동작온도 표기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표준사용 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기기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권장 안전사용기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 주의 문구(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경년 열화에 의한 발화 부상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 등 관련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에 나타낼 수 있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팬, 레인지 후드]

송풍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를 이용하여 공기의 유동을 일으켜 바람을 불거나 흡입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송풍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대 기후용 팬 T자 표기
- ◆ 국소 주위온도 40 °C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동작하는 팬은 주위 동작온도 표기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표준사용 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기기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권장 안전사용기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 주의 문구(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경년 열화에 의한 발화 부상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 등 관련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에 나타낼 수 있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팬, 레인지 후드]

환풍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이용조건이나 목적 등에 의해 FAN을 사용하여 공기를 유동시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환풍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대 기후용 팬 T자 표기
- ◆ 국소 주위온도 40 °C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동작하는 팬은 주위 동작온도 표기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표준사용 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기기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권장 안전사용기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 주의 문구(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경년 열화에 의한 발화 부상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 등 관련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에 나타낼 수 있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팬, 레인지 후드]

레인지후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1부 : 레인지 후드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구 등에 의해 동작되며 주방용레인지, 허브와 유사한 요리 기기 위에 설치되며 오염된 공기(필터를 통해서 실내로 다시 보내지거나 실외로 배출될 수 있는 공기)를 수집하여 실외로 배출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레인지후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대체할 수 있는 조명 램프의 최대 전력 입력을 다음과 같이 램프 홀더 가까이에 표시해야 한다.

“lamp max… W”

“램프”라는 단어는 IEC 60417-5012 (2002-10) 기호로 대체할 수 있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팬, 레인지 후드]

전기냉풍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FAN과 냉각기를 이용해 냉각된 공기를 배출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냉풍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대 기후용 팬 T자 표기
- ◆ 국소 주위온도 40 °C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동작하는 팬은 주위 동작온도 표기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표준사용 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기기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권장 안전사용기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 주의 문구(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경년 열화에 의한 발화 부상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 등 관련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에 나타낼 수 있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팬, 레인지 후드]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00, 송풍기 및 진공기(송풍기 및 진공기 겸용 포함)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먼지를 불어내는 기기로 장치 등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0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팬, 레인지 후드]

안전인증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00, 송풍기 및 진공기(송풍기 및 진공기 겸용 포함)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정원 송풍기로도 동작하고 먼지 모음 장치로 먼지를 모으는 정원 진공기의 역할도 하는 기기로, 장치 등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0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자동으로 세정과 건조를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자동세정 건조식변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IPX4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전기변좌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화장실 이용 시 변좌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변좌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IPX4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오물흡입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오물을 흡입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오물흡입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IPX4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가습기]

가습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9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8부 : 전기 가습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실내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모터 팬, 히터, 진동자 등을 이용하여 바람으로 물 입자를 분사하거나 증발시켜 가습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가습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주의 : 수증기가 뜨거움

◆ 물의 정격용량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9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그 밖에 유사한 기기]

기타 전기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그 밖에 전기기기와 유사한 기타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기타 전기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과일 껌질깎이	전기에어커튼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전기손난로
왁스 용해기	팬코일유닛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전기방석
초코렛 용해기	폐열 회수 환기장치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온열시트
파라핀 용해기	레이저사격기기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전격살충기
두피모발기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기구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자동판매기
샴푸기기	인형뽑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전기소독기
모발가습기	다트판	기포발생기	제습기
손톱정리기	농구게임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면도기	기타게임기기	이온발생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전기이발기	전기식기세척기	전기분무기	전기보온기
안면사우나기	전기식기건조기	물수건포장기	전기주온기
전기이발용의자	전기훈증살충기	물수건마는기기	전기온장고
전동침대	전기방향확산기	주 서	유체펌프
전기온열의자	수도 동결 방지기	주서믹서기	전기온수펌프
각도조절의자	산소이온발생기	후드믹서	납땜인두
컴프레서	전기정수기	전기녹즙기	납땜제거인두
전기온수매트	전기이온수기	크림거품기	권총형납땜기
전기온수 침대	초음파세척기	계란반죽기	열가소성도관용접기
전동칫솔	과일야채세척기	혼합기	필름접착기
구강세척기	기타 전기세척기	버터제조기	플라스틱절단기
해충퇴치기	오존수 발생장치	압축기	페인트제거기
전기포충기	전기헬스기구	슬라이스기	가열총
전기집진기	전기차총전기	커피분쇄기	전기조각기
전기광택기	자동차 어댑터	빙삭기	소용돌이욕조
수하물보관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반신-전신욕조
지폐교환기	전기시스템사우나기기	전기찜질기	발욕조
동전교환기	전기사우나기기	발보온기	기타 전기기기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과일 껍질깎이]

과일 껍질깎이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과일의 껍질을 깎을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과일 껍질깎이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과일 껍질깎이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과일 껍질깎이(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꺼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그 회전 방향이 지정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 용해기]

왁스 용해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왁스를 용해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왁스 용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 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 용해기]

쵸코렛 용해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쵸코렛을 용해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쵈코렛 용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세척 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 권장안전사용기간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 용해기]

파라핀 용해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파라핀을 용해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파라핀 용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 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이·미용기기]

두피모발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두피와 모발을 손질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두피모발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이·미용기기]

샴푸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샴푸를 자동으로 제공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샴푸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이·미용기기]

모발가습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모발에 가습을 하여 머리를 손질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모발가습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이·미용기기]

손톱정리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손톱을 정리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손톱정리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면도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부 : 면도기, 이발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를 이용하여 사람의 수염과 동물의 털 등을 깎는 기능을 가진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확인]

- 제품명 : 전기면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 가능 기호(손잡이)
- ◆ 습식 면도기 기호(손잡이)
- ◆ 물 세척 기호
- ◆ 옥조/샤워기 사용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이·미용기기]

전기이발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부 : 면도기, 이발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를 이용하여 사람의 두발과 동물의 털 등을 깎는 기능을 가진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이발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 가능 기호(손잡이)
- ◆ 습식 면도기 기호(손잡이)
- ◆ 물 세척 기호
- ◆ 옥조/샤워기 사용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이·미용기기]

안면사우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람의 안면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우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안면사우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전기이발용의자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2부 :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 등을 이용하여 이용원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의자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이발용의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전동침대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침대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를 이용하여 침대의 높이 혹은 기울기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확인]

- 제품명 : 전동침대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0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전기온열의자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
2-32부 :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온열 할 수 있는 의자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온열의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각도조절의자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2부 :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를 이용하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각도조절의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컴프레서]

컴프레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4부 : 전동 압축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와 압축기의 기계적인 장치로 구성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컴프레서(compressor)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매트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1001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열된 온수를 호스를 통하여 순환시켜 온열하는 매트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온수매트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 수위 식별, 최대/최소 수위 표시
 - ◆ 매트리스는 구겨서 사용 금지
 - ◆ 매트리스는 접어서 사용 금지
 - ◆ 매트리스를 바늘/날카로운 것으로 찌르지 마시오
 - ◆ 누수될 경우 전원플러그를 뽑고 AS센터와 연락하시오
 - ◆ 당뇨환자 및 피부질환 환자는 오랜시간동안 사용시 피부에 화상 위험
 - ◆ 분리 가능한 온수조절기 표시 추가
 - ◆ 호스가 꼬이거나 꺾인 상태로 사용하지 마시오
 - ◆ 저온화상에 주의하시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1001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 침대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1001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열된 온수를 호스를 통하여 순환시켜 온열하는 침대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온수 침대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 수위 식별, 최대/최소 수위 표시
 - ◆ 매트리스는 구겨서 사용 금지
 - ◆ 매트리스는 접어서 사용 금지
 - ◆ 매트리스를 바늘/날카로운 것으로 찌르지 마시오
 - ◆ 누수될 경우 전원플러그를 뽑고 AS센터와 연락하시오
 - ◆ 당뇨환자 및 피부질환 환자는 오랜시간동안 사용시 피부에 화상 위험
 - ◆ 분리 가능한 온수조절기 표시 추가
 - ◆ 호스가 꼬이거나 꺾인 상태로 사용하지 마시오
 - ◆ 저온화상에 주의하시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1001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구강청결기]

전동칫솔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2부 : 전기구강위생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의 힘으로 회전시키거나 떨개(바이브레이션)하여 이를 닦는 기능을 가진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동칫솔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IPX7 기호(2종기기인 경우)

◆ IPX4 기호(3종기기인 경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구강청결기]

구강세척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2부 : 전기구강위생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입속의 음식물 및 침샘의 내분비물과 양치 후 치 액들을 소용돌이치는 원통형의 중심에 파이프를 세우고 원통의 아래쪽으로부터 공기를 불어 넣어 파이프에 뚫려있는 구멍으로 물을 분무시켜 구강을 세척하는 기기(분사 방식에 따라 사이클론식, 벤투리식, 제트식이 있음)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구강세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IPX7 기호(2종기기인 경우)

◆ IPX4 기호(3종기기인 경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해충퇴치기]

해충퇴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 전기 살충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해충을 퇴치할 목적으로 만든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해충퇴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대체 램프설치된 기기 램프 형식으로 표기
- ◆ 기기의 램프 교체할 수 없고, 램프작동을 멈추었을 때 기기 폐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해충퇴치기]

전기포충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 전기 살충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해충을 잡아 가둘 수 있도록 만든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포충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대체 램프설치된 기기 램프 형식으로 표기
- ◆ 기기의 램프 교체할 수 없고, 램프작동을 멈추었을 때 기기 폐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집진기]

전기집진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 공기 청정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필터 등을 이용하여 공기중의 유해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집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교체 가능한 UV-C 방사체가 포함된 자외선 복사 공기 청정기에는 방사체의 유형과 다음 취지의 경고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경고 — 자외선 복사는 눈과 피부에 유해하다. 기기 밖에서 UV-C 방사체를 작동시키지 말 것.

- ◆ UV-C 방사체를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기기에는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또는 기호 ISO 7000-0790(2004-01)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서비스기기]

전기광택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구두 등을 자동으로 광택을 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광택기

- 모델명 : KPSA-1100

- 정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서비스기기]

수하물보관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수하물을 보관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수하물보관기
- 모델명 : KPSA-1100
- 정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서비스기기]

지폐교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지폐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지폐교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 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서비스기기]

동전교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동전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동전교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 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에어커튼]

전기에어커튼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 팬을 이용 공기의 외부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에어커튼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대 기후용 팬 T자 표기
- ◆ 국소 주위온도 40 °C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동작하는 팬은 주위 동작온도 표기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표준사용 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기기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권장 안전사용기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 주의 문구(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경년 열화에 의한 발화 부상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 등 관련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에 나타낼 수 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팬코일유닛]

팬코일유닛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팬 코일 유닛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대 기후용 팬 T자 표기
- ◆ 국소 주위온도 40 °C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동작하는 팬은 주위 동작온도 표기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표준사용 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기기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권장 안전사용기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 주의 문구(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경년 열화에 의한 발화 부상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 등 관련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에 나타낼 수 있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폐열 회수 환기장치]

폐열 회수 환기장치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폐열을 회수하여 환기 시킬 수 있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폐열 회수 환기장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대 기후용 팬 T자 표기
- ◆ 국소 주위온도 40 °C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동작하는 팬은 주위 동작온도 표기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표준사용 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기기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권장 안전사용기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 주의 문구(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경년 열화에 의한 발화 부상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 등 관련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에 나타낼 수 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게임기구]

레이저사격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레이저를 이용 사격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레이저사격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를 적용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게임기구]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기구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자동차 운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임 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기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 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를 적용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게임기구]

인형뽑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 장치를 조정하여 인형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한 게임 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인형뽑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 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를 적용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게임기구]

다트판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다트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다트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 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를 적용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게임기구]

농구게임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농구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농구게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를 적용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기타 게임기구]

기타게임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기타 게임 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기타게임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 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이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록(비디오게임기구)을 적용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기식기세척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부 :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5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8부 : 상업용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모터를 이용하여 식기 및 주방용 기구를 세척(헹굼)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식기세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식기세척기

(1) 배수판 위에 설치되도록 설계된 기기의 경우

- IPX1 이상이어야 한다.

(2) 자동수위조절이 되지 않는 기기의 경우

- 최대 허용 수위를 표시해야 한다.

◆ 전기식기세척기(상업용)

- 기기는 유해한 물의 침입 보호에 관하여 IPX1 이상이어야 한다.

(1) 설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다음의 내용을 기기애 표시해야 한다.

-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들의 수압 또는 압력의 범위 (킬로파스칼 단위(kPa))

- 최대 허용 증기압(킬로파스칼 단위(kPa))

- 최대 허용 온수의 수압(킬로파스칼 단위(kPa))

- 최대 허용 물, 증기, 그리고 온수의 온도(섭씨(°C))

(2) 전동기의 회전 방향이 전원 공급선과의 연결에 따라 달 수가 있고 역회전이 위험할 수 있는 경우

- 회전 방향이 분명하고 잘 보이도록 전동기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의 7항 및 KC 60335-2-5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5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기식기건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부 :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4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9부 : 상업용 전기보온장치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식기 및 주방용 기구를 건조시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식기건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식기건조기

- (1) 배수관 위에 설치되도록 설계된 기기의 경우
 - IPX1 이상이어야 한다.
- (2) 자동수위조절이 되지 않는 기기의 경우
 - 최대 허용 수위를 표시해야 한다.
- (3) 기기를 세척할 때 기기가 부분적으로 물에 잠기는 경우
 - 기기를 물에 담그 때 허용되는 최대 수위를 표시해야 하고, 다음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물에 담그 때는 표시된 수위를 넘지 않도록 하시오.'

◆ 전기식기건조기(상업용)

- 통상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IPX3 이상
- 그 밖의 기기는 IPX4 이상
- 250V를 초과하는 사용 전압에서 충전부에 닿게 되는 모든 달개에는 시호 IEC 60417-5036(2002-10) 또는 다음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경고-위험전압'
- (1) 수도에 접속하는 기기 중 사용설명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수압 및 수압의 범위(단위: kPa)
- (2) 우도가열원을 내장한 기기
 - 동작 주파수 또는 동작 주파수 범위(kHz)
 -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모든 유도 가열우리의 총 입력전력(W 또는 kW)
 -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모든 비유도 가열우리의 총 입력전력(W 또는 kW)
 - 유도코일에 닿게 되는 달개에는 기호 IEC 60417-5140 (2003-04) 또는 다음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주의-자기장'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의 7항 및 KC 60335-2-4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5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훈증기]

전기훈증살충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1부 : 전기훈증기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살충제를 확산시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훈증살충기
- 모델명 : KPSA-1100
-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입력이 10 W를 넘지 않는 경우, 기기에 최대 10 W라는 표시가 있을 수 있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0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훈증기]

전기방향확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1부 : 전기훈증기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향기를 확산시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

안전확인

- **제품명** : 전기방향확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입력이 10 W를 넘지 않는 경우, 기기에 최대 10 W라는 표시가 있을 수 있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0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수도 동결 방지기]

수도 동결 방지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수도동결방지기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 수도의 동파를 막을 수 있도록 구조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수도 동결 방지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1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산소이온발생기]

산소이온발생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이온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산소와 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산소이온발생기
- 모델명 : KPSA-1100
- 정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교체 가능한 UV-C 방사체가 포함된 자외선 복사 공기 청정기에는 방사체의 유형과 다음 취지의 경고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경고 — 자외선 복사는 눈과 피부에 유해하다. 기기 밖에서 UV-C 방사체를 작동시키지 말 것.

- ◆ UV-C 방사체를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기기에는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또는 기호 ISO 7000-0790(2004-01)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정수기]

전기정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정수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필터 등을 이용하여 물을 정수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정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통형 전기 정수기 이외의 기기들은 정격 압력을 파스칼 단위(bar)로 표시한다.
- ◆ 기기의 정격 용량은 리터(l)로 표시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0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정수기]

전기이온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이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해조에 물을 넣고 음극과 양극사이에 격막을 설치하고 직류전기를 흘려 물을 전기분해하여 이온화시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이온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의 정격 압력을 파스칼 단위(bar)로 표시한다.
- ◆ 기기의 정격 용량은 리터(l)로 표시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0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세척기]

초음파세척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초음파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초음파세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는 최소 IPX1 이상이어야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0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9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세척기]

과일야채세척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초음파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과일 및 야채를 세척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확인]

- 제품명 : 과일야채세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는 최소 IPX1 이상이어야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0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9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세척기]

기타 전기세척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초음파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과일 및 야채 이외 제품 등을 세척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확인]

- 제품명 : 기타 전기세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는 최소 IPX1 이상이어야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0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9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세척기]

오존수 발생장치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이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오존을 발생시켜 오존수를 이용하여 제품 등을 세척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확인]

- **제품명** : 오존수 발생장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의 정격 압력을 파스칼 단위(bar)로 표시한다.
- ◆ 기기의 정격 용량은 리터(l)로 표시한다.
- ◆ 기기는 최소 IPX1 이상이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0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9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헬스기구]

전기헬스기구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헬스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람의 신체를 움직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헬스기구
- 모델명 : KPSA-1100
- 정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러닝벨트가 있는 기기

- 최대 사용가능 체중(kg)을 표기 하여야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1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충전기

적용기준

- KC 61851-1,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1851-22,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2부 : 교류충전장치
- KC 61851-23,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3부 : 직류충전장치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기기로, 정격용량이 200 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차충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10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장치의 표기
- 일련번호
- 위상 개수
- 보호 등급
- 옥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경우 “옥내용” 또는 이에 준하는 것
- 2종 충전설비 표기
- 최소 부가정보(계약자의 전화번호, 주소)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1851-1의 11.15항과 KC 61851-22의 11.1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차충전기]

자동차 어댑터

적용기준

KC 62196-1, 전기차 충전시스템 – 플러그, 소켓 – 아웃렛, 커넥터 및 인렛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연결 접속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차 어댑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최대 작동 전압(V)
- ◆ 보호 등급에 대한 관련 기호
- ◆ 인용 항목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2196-1의 11.1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부 : 전기 재봉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옷감, 천 등의 바느질, 오버로크, 자수 등을 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가정용 전동재봉기
- 모델명 : KPSA-1100
- 정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에는 다음과 같이 교체할 수 있는 램프의 최대 입력 전력을 램프 받침 위나 근처에 표시한다.

램프 최대값 (W)

- “램프”라는 단어는 IEC 60417-5012(2002-10)로 대체될 수도 있다.
- 램프의 정격 전압은 기기의 정격 전압보다 낮을 때 표시한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사우나기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3부 : 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열부분과 사람이 들어가는 덮개 등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욕실에 전열장치를 설치하여 스팀을 발생시켜 스팀 욕을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스팀사우나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우나 전열기 및 적외선 발광체
 - 적외선 발광체를 정확히 동일한 제조사 및 발광체 모델로 대체하라는 지침을 명시해야 한다.
 - 기호 ISO 7000-0790(2004-01) 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전열기의 상단과 사우나룸의 천장 사이의 최소 거리
 - 이 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전열기의 하단과 사우나실의 바닥 사이의 최소 거리
 - 이러한 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보호용 레일을 포함한 사우나룸의 가연성 재료와 전열기 사이의 최소 수평 거리
 - 우묵하게 들어간 공간에 설치하도록 의도된 사우나 전열기의 설치될 공간의 최대 깊이와 최소폭
- ◆ 사우나 전열기 및 적외선 발광체에는 “경고 덮지 마시오.” 내용과 함께, 색상을 제외하고, ISO 3864-1의 금지 기호와 기호 IEC 60417-5641 (2002-10)을 표시해야 한다.
- ◆ 조립식 사우나 또는 조립식 적외선 캐빈의 내벽은 사우나 전열기 또는 적외선 발광체와 인접하여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경고 : 히터나 적외선 캐빈을 덮을 경우 화재 위험이 있다
- ◆ 사우나 전열기에는 다음의 경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 용기에 돌을 부적절하게 채우면 화재 위험이 있음.
- ◆ 사우나실 안쪽에 부착하도록 만들어진 기기, 제어장치, 보호장치, 제어판
 - IPX4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3부 : 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열부분과 사람들이 들어가는 덮개 등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욕실에 전열장치를 설치하여 핀란드식 사우나를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사우나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우나 전열기 및 적외선 발광체
 - 적외선 발광체를 정확히 동일한 제조사 및 발광체 모델로 대체하라는 지침을 명시해야 한다.
 - 기호 ISO 7000-0790(2004-01) 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전열기의 상단과 사우나룸의 천장 사이의 최소 거리
 - 이 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전열기의 하단과 사우나실의 바닥 사이의 최소 거리
 - 이러한 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보호용 레일을 포함한 사우나룸의 기연성 재료와 전열기 사이의 최소 수평 거리
 - 우뚝하게 들어간 공간에 설치하도록 의도된 사우나 전열기가 설치될 공간의 최대 깊이와 최소폭
- ◆ 사우나 전열기 및 적외선 발광체에는 "경고 덮지 마시오." 내용과 함께, 색상을 제외하고, ISO 3864-1의 금지 기호와 기호 IEC 60417-5641 (2002-10)을 표시해야 한다.
- ◆ 조립식 사우나 또는 조립식 적외선 캐빈의 내벽은 사우나 전열기 또는 적외선 발광체와 인접하여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경고: 히터나 적외선 캐빈을 덮을 경우 화재 위험이 있다
- ◆ 사우나 전열기에는 다음의 경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용기에 물을 부적절하게 채우면 화재 위험이 있음.
- ◆ 사우나실 안쪽에 부착하도록 만들어진 기기, 제어장치, 보호장치, 제어판
 - IPX4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행과 KC 60335-2-53의 7행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이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3부 : 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외곽으로 덮여 있고, 암석 또는 유사한 재질로 채워지는 용기를 가지는 발열체와 팬이 있는 전열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우나 전열기 및 적외선 발광체
 - 적외선 발광체를 정확히 동일한 제조사 및 발광체 모델로 대체하려는 지침을 명시해야 한다.
 - 기호 ISO 7000-0790(2004-01) 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전열기의 상단과 사우나룸의 천장 사이의 최소 거리
 - 이 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전열기의 하단과 사우나실의 바닥 사이의 최소 거리
 - 이러한 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보호용 레일을 포함한 사우나룸의 가연성 재료와 전열기 사이의 최소 수평 거리
 - 우뚝하게 들어간 공간에 설치하도록 의도된 사우나 전열기가 설치될 공간의 최대 깊이와 최소폭
- ◆ 사우나 전열기 및 적외선 발광체에는 "경고 덮지 마시오." 내용과 함께, 색상을 제외하고, ISO 3864-1의 금지 기호와 기호 IEC 60417-5641 (2002-10)을 표시해야 한다.
- ◆ 조립식 사우나 또는 조립식 적외선 캐빈의 내벽은 사우나 전열기 또는 적외선 발광체와 인접하여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경고: 히터나 적외선 캐빈을 덮을 경우 화재 위험이 있다
- ◆ 사우나 전열기에는 다음의 경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용기에 물을 부적절하게 채우면 화재 위험이 있음.
- ◆ 사우나실 안쪽에 부착하도록 만들어진 기기, 제어장치, 보호장치, 제어판
 - IPX4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행과 KC 60335-2-53의 7행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사우나기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3부 : 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우나 전열기, 제어기, 보호 장치 및 제어판을 갖춘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우나 전열기 및 적외선 발광체
 - 적외선 발광체를 정확히 동일한 제조사 및 발광체 모델로 대체하라는 지침을 명시해야 한다.
 - 기호 ISO 7000-0790(2004-01) 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전열기의 상단과 사우나룸의 천장 사이의 최소 거리
 - 이 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전열기의 하단과 사우나실의 바닥 사이의 최소 거리
 - 이러한 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보호용 레일을 포함한 사우나룸의 가연성 재료와 전열기 사이의 최소 수평 거리
 - 우뚝하게 들어간 공간에 설치하도록 의도된 사우나 전열기가 설치될 공간의 최대 깊이와 최소폭
- ◆ 사우나 전열기 및 적외선 발광체에는 "경고 덮지 마시오." 내용과 함께, 색상을 제외하고, ISO 3864-1의 금지 기호와 기호 IEC 60417-5641 (2002-10)을 표시해야 한다.
- ◆ 조립식 사우나 또는 조립식 적외선 캐빈의 내벽은 사우나 전열기 또는 적외선 발광체와 인접하여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경고: 히터나 적외선 캐빈을 덮을 경우 화재 위험이 있다
- ◆ 사우나 전열기에는 다음의 경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용기에 물을 부적절하게 채우면 화재 위험이 있음.
- ◆ 사우나실 양쪽에 부착하도록 만들어진 기기, 제어장치, 보호장치, 제어판 - IPX4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5부 :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수족관 및 정원연못의 수온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확인]

- 제품명 :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 사용용 기기는 1m 이상이라면 최대 동작 깊이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7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71부 :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동물을 부화시키거나 사육을 하기 위한 히터를 내장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 복사 기기는 다음을 표시해야한다.
 - 주의 : 화재 위험 또는 기호 "경고, 화재 위험/인화성 물질"
 - 동물용 열 방사 기기
 - 기기는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
 - 안전망을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 다음 사항도 표기되어야 한다.
 - 대체 가능한 방열기의 최대 정격 : ...W
 - 방열기와 동물 또는 인화성 물질 간의 최소 거리
 - "덮지 말 것" 또는 ISO 3864-1의 금지 표지(색상 제외)와 결합된 기호(IEC 60417-5641(2002-10))
 -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또는 ISO 7000-0790
- ◆ 병아리 부화기 및 전기 포란기
 - "덮지 말 것" 또는 ISO 3864-1의 금지 표지(색상 제외)와 결합된 기호 IEC 60417-5641 (2002-10)를 표시하여야 한다.
- ◆ 정격 전압 24 V를 초과하고 인화성 물질로부터 500 mm 이하의 거리에 고정된 난방 기기
 - 동물용 난방 기기
 - "덮지 말 것" 또는 ISO 3864-1의 금지 표지(색상 제외)와 결합된 기호 ISO 7000-0790
- 다음 사항도 표기되어야 한다.
 - 기기는 동물 또는 인화성 물질로부터 최소 고정 거리 지시 사항을 숙지할 것 (또는 ISO 7000-0790).
- ◆ 통상 사용시 바닥 기준선에서 작동시키거나 바닥보다 500 mm 이상 높지 않은 곳에서 작동시키는 열복사 기기 이외 전열기기
 - IPX7, 기타기는 IPX4 이상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행과 KC 60335-2-71의 7행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5부 :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수중 산소량을 증가하기 위해 수중에 공기를 주입하는 펌프가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확인]

- 제품명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 사용용 기기는 1m 이상이라면 최대 동작 깊이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5부 :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관상을 목적으로 조명이나 여과기를 내장한 어항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관상어용 전기어항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 사용용 기기는 1m 이상이라면 최대 동작 깊이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기포발생기]

기포발생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5부 :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관상어용으로 사용되고 수중 산소량을 증가하기 위해 수중에 공기를 주입하는 펌프가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확인]

- 제품명 : 기포발생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 사용용 기기는 1m 이상이라면 최대 동작 깊이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필터 시스템에 공기를 통과시켜 공기가 여과되는 독립된 기기(필터시스템에 이온화장치를 부착한 기기도 있음)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공기청정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교체 가능한 UV-C 방사체가 포함된 자외선 복사 공기 청정기에는 방사체의 유형과 다음 취지의 경고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경고 — 자외선 복사는 눈과 피부에 유해하다. 기기 밖에서 UV-C 방사체를 작동시키지 말 것.

- ◆ UV-C 방사체를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기기에는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또는 기호 ISO 7000-0790(2004-01)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이온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산소와 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교체 가능한 UV-C 방사체가 포함된 자외선 복사 공기 청정기에는 방사체의 유형과 다음 취지의 경고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경고 — 자외선 복사는 눈과 피부에 유해하다. 기기 밖에서 UV-C 방사체를 작동시키지 말 것.

- ◆ UV-C 방사체를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기기에는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또는 기호 ISO 7000-0790(2004-01)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분무기]

전기분무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68부 : 산업용과 상업용 분무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 또는 전자진동기의 실린더 압축장치에 의해 내부에 압력을 발생하여 액체를 압력관을 통해 분무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확인]

- **제품명** : 전기분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제조업체의 업종 명칭 및 주소 및 해당 시, 정식 담당자. 특정 주소는 우편 연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 ◆ 기기의 일련 번호
- ◆ 제품을 기술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기기 명칭 및 시리즈 또는 종류, 이는 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조 연도, 이는 제조 공정이 완료된 연도이다.
- ◆ 최대 정격 작동 압력(MPa 또는 bar 단위)
- ◆ 50°C 를 초과할 경우 분무액의 최대 출구 온도(°C 단위)
- ◆ 기기에는 가장 일반적 구성의 질량을 kg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 ◆ 기기가 60 °C를 초과하는 세제를 채우도록 설계된 경우, 충진 입구 근처에 다음의 경고를 부착해야 한다. “경고 뜨거움. 만지지 말 것.” 글자의 높이는 4 m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구문은 기호 IEC 60417-5041(2002-10)로 대체할 수 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물수건포장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물수건 포장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물수건을 포장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물수건 포장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1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물수건마는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물수건 마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물수건을 말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물수건마는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주 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과일 등의 재료를 찌꺼기(residue)와 주스(juice)로 분리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주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주서믹서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과일 등의 재료를 찌꺼기(residue)와 주스(juice)로 분리 및 혼합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주서믹서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후드믹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음식 재료를 혼합(mixing)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후드믹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전기녹즙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기계적 압착을 이용하여 야채의 족을 얻어 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녹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크림거품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크림의 거품을 얻어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크림거품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계란반죽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계란을 반죽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계란반죽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혼합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과일 등의 식재료를 혼합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혼합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버터제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버터를 제조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버터제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압축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압착하여 줍을 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압축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슬라이스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식재료 등을 얇게 썰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슬라이스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커피분쇄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커피를 분쇄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커피분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빙삭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얼음을 잘게 갈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빙삭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기타주방용 전동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사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K 1002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찜질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신체에 접촉하여 일부분에 온열을 가짐으로써 신체 일부분을 따뜻하게 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찜질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찜질기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속독하시오
 - 핀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어의 사용 금지
 - ISO 7000-3114
 ISO 7000-3124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경고 : 온열에 의한 화상 위험
- 기기 사용 시, 당뇨환자, 피부질환을 앓는 사람,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화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를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예) 사용자의 옆에 대한 민감 정도에 따라 온열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과 K 1002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발보온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발 보온기 및 발 보온패드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용자의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발에 신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발보온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용전에 외출용 신발을 벗어라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K 1002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찜질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용자의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손난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경고 : 온열에 의한 화상 위험

◆ 기기 사용 시, 당뇨환자, 피부질환을 앓는 사람,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화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를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예) 사용자의 옆에 대한 민감 정도에 따라 온열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과 K 1002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전기방석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한 면이 0.3m² 이하의 발열 면적을 갖는 유연부로 구성되어 인체의 일부를 가열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방석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숙독하시오
- 핀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어의 사용 금지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온열시트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온열시트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숙독하시오
- 핀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어의 사용 금지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전격살충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 전기살충기의 개별요구사항

KC 100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 모기채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빛으로 해충을 유도하여 두 개 이상의 격자 눈금 사이에 고전압을 인가하여 유도된 해충을 감전시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 XXXX XXXX

· 제품명 : 전격살충기

· 모델명 : KPSA-1100

· 정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격살충기

- 위험 : 고압
- 대체 램프에 설치된 기기램프의 관련 형식으로 표시
- 기기를 파손하거나 파괴하지 않고는 교체할 수 없는 램프를 내장한 기기
“경고: 이 기기의 램프는 교환 수 없다. 램프가 작동을 멈추었을 때는 기기를 폐기한다.”

◆ 전격살충기(모기채)

- 기기는 IEC 60417의 기호 5036으로 표시되어야 하거나 다음 내용으로 표시
- 배터리 구동기기는 배터리 전압과 극성이 무관하지 않는한 극성을 표시해야 한다.
- 배터리 구동기기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이름, 상표 또는 제조사의 식별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책임있는 판매자
- 모델 또는 형식 기준
- IPX0를 제외한 물 저항 정도를 나타내는 IP 넘버
- 배터리의 형식 기준
관련있다면, 양극의 단자는 심볼 IEC 60417-5005 (2002-10)로 나타내야하고 음극의 단자는 IEC 60417- 5006(2002-10)로 나타내야 한다.
기기가 한개 이상의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배터리의 적절한 극성 연결을 나타내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9의 7항과 KC 100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7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5부 : 상업용 디스펜싱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신문, 담배, 커피, 음료, 기타 제품 등의 판매기로서, 동전을 투입하거나 카드를 넣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물건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자동판매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 기기의 정격압력(단위 : MPa)
- ◆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기기인 경우, 최대허용수압(단위 : MPa)
- ◆ 수동으로 물 채우는 기기 : 수위표시 또는 청각이나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시
-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 기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물에 담그게 되는 기기 : 최대허용수위 표시 및 “표시된 수위 이상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7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소독기]

전기소독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7000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 전기소독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자외선 살균등을 내장하여 목적물을 살균 소독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소독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7000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제습기]

제습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0부 :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주위의 공기로부터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설계하고, 외함 내에 완성된 조립품. 전기로 동작하는 냉매시스템 및 공기를 순환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기기 및 배출물을 모으고 유지 및 처리하는 배수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제습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냉매의 질량 또는 공비형 냉매를 제외한 각각의 혼합 성분의 질량
- ◆ 냉매 식별
- ◆ 냉매 회로에 관하여 흡입측 및 방출측에 대하여 각각의 허용 최대 운전 압력
- ◆ 유체의 흐름 방향 표시
- ◆ 실외용인 경우 - IPX4
- ◆ 실내용(세탁실제외)인 경우 -IPX0
- ◆ 세탁실에서 사용할 경우 - IPX1
- ◆ 보조히터가 있을 경우 - 보조 히터의 정격입력 표시
- ◆ 인화성 냉매 사용시
 - 사용설명서, 정비지침 및 설치지침을 읽어야 한다는 기호
 - 추가 경고 기호(화염기호: ISO 3864의 B.3.2)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4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6부 :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기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음식물 쓰레기를 모터를 이용하여 압축, 분쇄하거나 히터를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기기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음식물처리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음식물처리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6부 :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기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주방용 싱크대에 설치하여 모터를 이용하여 음식물분쇄기를 분쇄하는 기기로, 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주방용 오물분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전기보온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2부 : 보온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열장치를 이용해서 식료품(음식) 또는 용기(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로 음식이나 그릇류를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확인]

- 제품명 : 전기보온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020년 10월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를 세척할 때 기기가 부분적으로 물에 잠기는 경우
 - 기기를 물에 담글 때 허용되는 최대 수위를 표시해야 하고, 다음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물에 담글 때는 표시된 수위를 넘지 않도록 하시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1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전기주온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2부 : 보온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술을 보온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주온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를 세척할 때 기기가 부분적으로 물에 잠기는 경우
- 기기를 물에 담글 때 허용되는 최대 수위를 표시해야 하고, 다음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물에 담글 때는 표시된 수위를 넘지 않도록 하시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1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전기온장고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9부 : 상업용 전기 보온찬장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식품 및 음료 등을 전기적 가열장치에 의하여 보온을 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온장고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온장고

- 통상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IPX3 이상
- 그 밖의 기기는 IPX4 이상
250V를 초과하는 사용 전압에서 충전부에 닿게 되는 모든 담개에는 기호 IEC 60417-5036 (2002-10) 또는 다음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경고-위험전압’

◆ 수도에 접속하는 기기 중 사용설명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수압 및 수압의 범위(단위: kPa)

◆ 유도가열원을 내장한 기기

- 동작 주파수 또는 동작 주파수 범위(kHz)
-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모든 유도 가열유닛의 총 입력전력(W 또는 kW)
-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모든 비유도 가열유닛의 총 입력전력(W 또는 kW)
- 유도코일에 닿게 되는 담개에는 기호 IEC 60417-5140 (2003-04) 또는 다음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주의-자기장’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유체펌프]

유체펌프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1부 : 전기 펌프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력을 이용하여 기계적 수압을 발생시켜 액체 및 오수를 이동시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확인

- 제품명 : 유체펌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50W 초과 펌프는 다음 표시

- 총 수두
- 최대 동작 깊이
- 회전방향
- 최대 액체온도, 동작 기간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C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1부 : 전기 펌프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기계적 수압을 발생시켜 온수를 이동시키는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온수펌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50W 초과 펌프는 다음 표시

- 총 수두
- 최대 동작 깊이
- 회전방향
- 최대 액체온도, 동작 기간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여,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C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납땜인두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납땜을 녹이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납땜인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납땜제거인두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납땜을 녹이고 제거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납땜제거인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권총형납땜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납땜을 녹이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권총형납땜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020년 10월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열가소성도관용접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일체화된 가열소자를 가지며 가연성재를 부분적으로 녹여 도관을 용접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열가소성도관용접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필름접착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필름을 전기가열부분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가열되어진 부분에 열가소성 필름을 접착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필름접착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플라스틱절단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재료가 고정되는 전기가열부분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가열된 부분에 플라스틱을 절단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플라스틱절단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페인트제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도료연화용(페인트)으로 전기적으로 가열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가열총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뜨거운 공기를 분사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가열총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전기조각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조각기를 이용하여 나무나 다른 물질을 조각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조각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욕조]

소용돌이욕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0부 : 전기기포 발생욕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진공성형 등으로 제작된 욕조에 전기모터(Pump) 및 흡입구, 히터, 배관 등을 하나로 시스템화 시켜 일체형으로 만든 기기로,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소용돌이욕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6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욕조]

반신·전신욕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2, 반신욕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기기 안에 전열소자가 내장되어 있고, 그 전열소자에 의해 따뜻해진 물에 몸을 담글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반신·전신욕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최대 욕조 물 수위를 나타내는 수위표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위를 나타내는 표시

◆ 반신욕조의 경고문

- 경고: 온수에 의한 화상 위험
- 기기 사용시, 당뇨환자, 피부질환을 앓는 사람,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화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를 보기쉬운 곳에 자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사용자가 열의 민감 정도에 따라 물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 및 K 1000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욕조]

발욕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3, 발욕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기기 안에 전열소자가 내장되어 있고, 그 전열소자에 의해 따뜻해진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발욕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IPX4 표기
- ◆ 욕조의 최대 물 수위표시
- ◆ ‘경고: 온수에 의한 화상 위험’
- ◆ ‘사용자가 열의 민감 정도에 따라 물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 1000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그 밖에 유사한 기기]

기타 전기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그 밖에 전기기기와 유사한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기타 전기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전기차 충격기는 정격용량이 200 kVA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격합성확인

- 감자탈피기
- 전기정미기
- 전기 뺑 자르개
- 애완동물 목욕기
- 전기주류숙성기
- 전기시계
-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전기분수기
- 슬라이드 투영기
- 필름스트립 투영기
- OHP
- 필름투영기
- 착유기
- 보풀제거기
-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전기 작동 도어록
- 공기청정기
- 이온발생기
- 전동형 롤스크린
- 기타 전기기기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감자탈피기]

감자탈피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감자의 껍질을 깨울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감자탈피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감자탈피기 (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감자탈피기 (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시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전기정미기]

전기정미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쌀의 껍질을 깎을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기정미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정미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전기정미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시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전기 빵 자르개]

전기 빵 자르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를 이용 빵을 절단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기 빵 자르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 빵 자르개 (가정용)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전기 빵 자르개 (상업용)

(1) IPX1 표기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시선으로 구분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전기주류속성기]

애완동물 목욕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애완동물 목욕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애완동물을 목욕시킬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애완동물 목욕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17항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전기주류숙성기]

전기주류숙성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 전기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주류를 숙성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기주류숙성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5 A 100 W 60 Hz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주류숙성기

- 기후등급
- 램프의 최대 정격 와트
(램프가 기기 부품과 함께 제조자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
는 해당되지 않음)
- 발포제 주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전동압축기 타입 기기의 경우

- 정격전류(A)로만 표기(아이스크림 기기 제외)
-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그 이외의 기기 경우

- 제상 히터 전력이 기기의 정격 입력 전력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가열 시스템 전력(W)이 100 W보다 클 경우

- 가열 시스템 전력(W) 표기

◆ 내장형 제빙기이면서 전력이 100 W가 넘는 경우

- 제빙기 최대 입력전력(W)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4항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전기시계]

전기시계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6부 : 전기시계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교류전원을 사용하고 시간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측정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기시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6항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공급자적합성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7부 : 피부관리용 자외선 및 적외선 방사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적외선 방출기를 내포하는 어떤 스크린이나 보호막의 스크린 효과에 관계없이 800nm 혹은 그 이상의 파장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방사원을 가진 피부 관리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모델명 : KPSA-1100
- 정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상업용 UV기기의 경우

- 가정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 UV방사기가 있는 경우

경고 : 자외선은 피부 노화나 피부 암 같이 눈과 피부에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는다. 제공된 보호 고글을 착용한다. 특정한 악과 화장품은 민감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 휙도가 100,000 cd/m²를 초과하는 UV 방사기가 있는 기기의 경우

경고 : 빛이 강함. 방사기를 응시하지 말 것.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7항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7부 : 피부관리용 자외선 및 적외선 방사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자외선 방출기를 내포하는 어떤 스크린이나 보호막의 스크린 효과에 관계없이 400nm 혹은 그 이하의 파장에서 전자기적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방사원을 가진 피부 관리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상업용 UV기기의 경우

- 가정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 UV방사기가 있는 경우

경고 : 자외선은 피부 노화나 피부 암 같이 눈과 피부에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는다. 제공된 보호 고글을 착용한다. 특정한 악과 화장품은 민감도를 증가 시킬 수도 있다.

◆ 휙도가 100,000 cd/m²를 초과하는 UV 방사기가 있는 기기의 경우

경고 : 빛이 강함. 방사기를 응시하지 말 것.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7항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전기분수기]

전기분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5부 :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분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기분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 사용용 기기는 1 m 이상이라면 최대 동작 깊이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5항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투영기]

슬라이드 투영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6부 :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슬라이드의 스틸 투영(정지영상)을 위한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슬라이드 투영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투영 램프의 입력 전력을 램프홀더 근처나 위에 표기

◆ 램프의 정격전압 또한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투영기]

필름스트립 투영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6부 :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필름 스트립 또는 룹(Loop)에서 각각의 틀의 순차적 또는 무작위 방식 투영을 위한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필름스트립 투영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투영 램프의 입력 전력을 램프홀더 근처나 위에 표기

▶ 램프의 정격전압 또한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투영기]

OHP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6부 :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스틸 투영 용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OHP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KPSA-1100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투영 램프의 입력 전력을 램프홀더 근처나 위에 표기

▶ 램프의 정격전압 또한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투영기]

필름투영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6부 :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스크린 위에 동영상 필름을 보기 위한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필름투영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투영 램프의 입력 전력을 램프홀더 근처나 위에 표기

▶ 램프의 정격전압 또한 표시.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착유기]

착유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7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0부 : 전기착유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진공 시스템, 진동 시스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클러스터 그리고 다른 부품들을 포함하는 절을 짜기 위한 기계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착유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 분무 세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 IPX6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는 착유기 또는 중간조립품

- "호스로 물을 뿌리지 말 것"이라는 문구 또는 ISO 3864-1의 금지 표지(색상 제외)와 결합된 기호 ISO 7000-0073을 표기하여야 한다.
- 호스로 물을 뿌리지 말 것.

◆ 진공 펌프와 맥동 장치

- 정격 진공(단위 : kPa)을 표기해야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7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보풀제거기]

보풀제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부 : 면도기, 이발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회전하는 칼날을 이용하여 옷에 붙은 보풀을 제거하는 기기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보풀제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의 7항에 따라 제품 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콩나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1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공급자적합성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전기 작동 도어록]

전기 작동 도어록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작동 도어록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건을 자동으로 동작 시킬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기 작동 도어록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1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필터 시스템에 공기를 통과시켜 공기가 여과되는 독립된 기기로, 필터시스템에 이온화 장치를 부착한 기기도 있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공기청정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교체 가능한 UV-C 방사체가 포함된 자외선 복사 공기 청정기에는 방사체의 유형과 다음 취지의 경고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경고 : 자외선 복사는 눈과 피부에 유해하다. 기기 밖에서 UV-C 방사체를 작동시키지 말 것.

◆ UV-C 방사체를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기기에는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또는 기호 ISO 7000-0790(2004-01)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살균이온을 배출하여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기기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이온발생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교체 가능한 UV-C 방사체가 포함된 자외선 복사 공기 청정기에는 방사체의 유형과 다음 취지의 경고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경고 : 자외선 복사는 눈과 피부에 유해하다. 기기 밖에서 UV-C 방사체를 작동시키지 말 것.

- ◆ UV-C 방사체를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기기에는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또는 기호 ISO 7000-0790(2004-01)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전동형 롤스크린]

전동형 롤스크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9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7부 : 회전식 셔터, 차양, 블라인드 및 이와 유사한 구동장치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를 이용 스위치 조작으로 스크린 크기를 조절 할 수 있는 롤 스크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동형 롤스크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및 전기구동장치를 말한다)

(1) 구동부 없이 공급되는 구동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정격토크(단위 : Nm)
 - 정격동작시간(단위 : 분).
 - 연속사용 용도의 기기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구동부를 제공하는 구동장치
- 정격동작주기가 표기되어야 한다.
 - 연속사용 용도의 기기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9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그 밖에 유사한 기기]

기타 전기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그 밖에 유사한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기타 전기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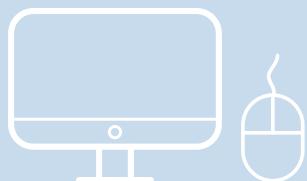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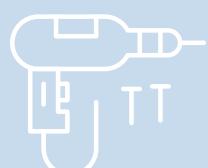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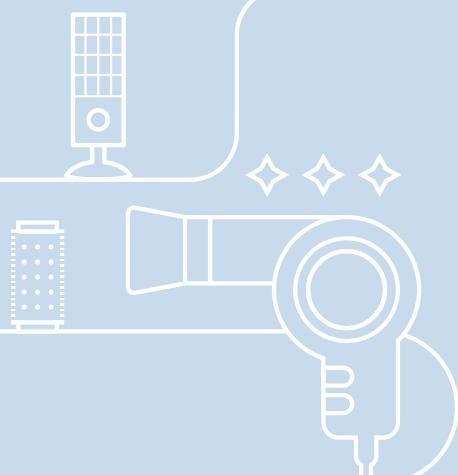


부록



지정 시험 기관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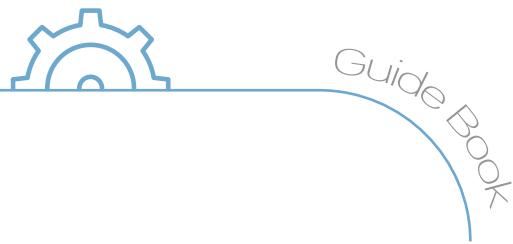
① 지정 시험 기관

시험 · 인증기관 안내

기관명	소재지	대표번호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경상남도 진주시 총의로 10	055-791-3114	https://www.ktl.re.kr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02-2102-2500	http://www.kcl.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02-2164-0011	http://www.ktr.or.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1899-7654	http://www.ktc.re.kr
FITI시험연구원(FITI)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79 (마곡동 778)	02-3299-8000	https://www.fiti.re.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산로 52 (용두동 232-22)	02-3668-3000	http://www.katri.re.kr/kr
KOTIT시험연구원(KOTIT)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상대원동 138-7)	02-3451-7000	http://www.kotiti-global.com

시험 · 인증기관 담당부서 안내

담당기관	품목 구분	세부품목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안전인증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안정기내장형 램프	정보조명평가센터
	안전인증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전기총전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모발관리기, 전기온수기, 전기 냉장·냉동기기, 전열기구, 냉방기, 회장실용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 살총기, 팬, 레인지 후드,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자레인지(300MHz~32G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마사지기	전기기기평가센터
	안전인증	전자개폐기, 퓨즈, 차단기	인증관리센터



담당기관	품목 구분	세부품목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안전인증	커판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신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 한다], 리튬이차단전지	전기부품평가센터
	안전인증	리튬이차단전지,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6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전력신산업기술센터
	안전확인	오디오시스템,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디지털TV, 오디옠프로세서, 코팅기, 전기차 충전기, 모니터, 문서세단기, 백열등기구, 탈레비전수상기, 복사기, 프린터, 천공기, 고주파웰터(고주파용접기), 전기용접기, 영상프로세서, 프로젝터, 노트북컴퓨터, 디스크 플레이어, 무정전공급장치, 방진램프	정보조명평가센터
	안전확인	전기집진기, 전기애어커튼, 팬코일유닛, 폐열 화수 환기장치, 전기흘증기, 산소이온발생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기온수매트,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유체펌프, 전기기열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컴퓨터, 구강청결기, 제습기, 광일 껌질깎이, 서비스기기, 게임기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자동판매기, 전기욕조, 사우나기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기소독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전기헬스기구, 관상 및 애완용 전용기기	전기기기평가센터
	안전확인	이·미용기기, 해충퇴치기,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세척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기포발생기기, 전기분무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전기용해기, 음식물처리기,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전기부품평가센터
	안전확인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전지	전력신산업기술센터
	공급자격합성 확인	보풀 제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동형 롤스크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감자 탈피기, 전기 정미기, 전기 뺨 자르개, 전기주류숙성기, 착유기	전기기기평가센터
	공급자격합성 확인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시계, 전기분수기, 투영기, 샤워 및 콩나물 재배기, 전기 작동 도어록,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부품평가센터
	공급자격합성 확인	라디오수신기, 신호변환장치, CATV방송수신기, 영상전송기, 전동타자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팩시밀리기기, 제본기,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음성기록기, 전자시계, 모듈레이터, 스캐너, 교통카드 충전기, 음성 음향신호 및 그 밖의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형광램프용 스탠더, 비디오키메라, 비디오푸, 영상기록계,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편집기, 금전등록기, 전자칠판 및 보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기업자 단말장치, 실물화상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음성플레이어, CCTV 카메라, 비디오게임기구, 지폐계수기, 번호표발행기, 재단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 리시버, 컴퓨터에서 게이트, 턴테이블, 전자악기, 전기소자기, A/D 및 D/A 신호변환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튜너, 위상방송수신기, 음질조절기, A/V신호수신기, 앰프, 음성 및 영상분배기, 어학실습기, 동전계수기, 종합유선 방송 기업자 단말장치, 입체영상기, 전화기, 원격제어방송기기	정보조명평가센터



부록

담당기관	품목 구분	세부품목	담당부서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안전인증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모발관리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전기액체가열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전기온수기, 전기 냉장·냉동기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충전기, 전기건조기(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전열기구, 전기마사지기, 냉방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설帚기, 팬레인지 후드, 회장실용 전기기기, 가습기,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안정기내장형 램프,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태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리튬이차단전지	전기제품인증팀
	안전확인	텔레비전수상기, 디스크 플레이어, 오디오시스템, 오디오프로세서, 영상프로세서, 모니터, 프린터, 프로젝터, 문서 세단기, 천공기, 복사기, 무정전공급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디지털TV, 코팅기, 노트북컴퓨터	전기제품인증팀
	안전확인	과일 깨질까이, 전기용해기, 이·미용기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구강청결기, 해충퇴치기, 전기집진기, 서비스기기, 전기애어컨, 팬코일유닛, 폐열 화수 환기장치, 게임기구,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기훈증기, 수도 동결 방지기, 산소이온발생기, 전기정수기, 전기세척기, 전기휀트리기구, 전기차 충전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사우나기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기포발생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기분무기, 물수건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자동판매기, 전기소독기, 제습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유체펌프, 전기기열기기, 전기욕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백열등기구, 방전램프,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고주파엘타(고주파용접기), 전기용접기,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전기제품인증팀
	공급자적합성 확인	비디오키메라, 튜너, 라디오수신기, 리시버, 음성기록계, 음성플레이어, 비디오판, 음질조절기, 신호변환장치, 컴프레서 케이트, 전자시계, CCTV 카메라, 영양수신기 및 변환기, 영상기록계, A/V 신호수신기, CATV방송수신기, 턴테이블, 모듈레이터, 비디오게임기구,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앰프, 편집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영상전송기, 전자악기, 스캐너, 지폐계수기, 금전 등록기, 어학습습기, 전자칠판 및 보드, 동진계수기, 전동티저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 충전기, 번호표발행기,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음성 음향신호 및 그 밖의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기업자 단말장치, 종합유선방송 기업자 단말장치,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 변환기, A/D 및 D/A 신호변환기,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재단기, 실물화상기, 입체영상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 전화기, 팩시밀리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원격제어방송 기기, 제본기, 감자 탈피기, 전기 정미기, 전기 뺨 자르개,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주류숙성기, 전기기계,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분수기, 투영기, 칙유기, 보풀제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기 작동 도어록,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동형 롤스크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형광램프용 스타터	
한국기계 전자전자시험 연구원	안전인증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기온수기, 전열기구, 모발관리기, 전기청소기,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주방용 전열기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전기액체가열기기, 전기 냉장·냉동기기, 전자레인지(300MHz~31G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설帚기, 팬, 레인지 후드, 전기마사지기, 회장실용 전기기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냉방기	전기안전센터



Guide Book

담당기관	품목 구분	세부품목	담당부서
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 연구원	안전인증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2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전자안전센터
	안전인증	램프홀더, 안정기·내장형 램프,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조명기술센터
	안전인증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커파 시터 및 전원필터	소재부품평가센터
	안전인증	전자개폐기, 퓨즈, 차단기	충청중전기평가센터
	안전인증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태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5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리튬이차단전지	에너지평가센터
	안전확인	해충퇴치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서비스기기, 자동판매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유제펌프, 컴프레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과일 깨질깎이, 가정용 전동 재봉기, 게임기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이·미용기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전기 집진기, 폐열 회수 환기장치, 음식물처리기, 전기온수매트, 전기분무기, 구강청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전기애어커튼, 전기소독기, 팬코일유닛, 제습기, 산소이온발생기, 전기 정수기, 전기훈증기, 전기가열기기, 전기세척기, 전기헬스기구,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기포 발생기기, 전기용해기, 샤워나기기,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욕조	전기안전센터
	안전확인	오디옠프로세서, 문서 세단기, 디지털TV, 디스크 플레이어, 프린터, 무정전공급장치, 전기차 충전기, 텔레비전수상기, 모니터, 복사기, 오디오시스템, 프로젝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영상프로세서, 천공기, 코팅기, 노트북컴퓨터	전자안전센터
	안전확인	백열등기구, 냉전램프	조명기술센터
	안전확인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회전기기센터
	안전확인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고주파웨터(고주파용접기), 전기용접기	소재부품평가센터
	안전확인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에너지평가센터
공급자적합성 확인	전기분수기, 치유기, 전동형 롤스크린, 전기주류숙성기, 감자 탈피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 청정기, 전기 뺨 자르기, 투영기, 전기 작동 도어록, 전기시계,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보풀 제거기, 새싹 및 흉나물 제거기, 애원동물 목욕기, 전기 정미기	전기안전센터	
	공급자적합성 확인	음성기록기, 신호변환장치, 영상기록기,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전자악기, 전자칠판 및 보드,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A/D 및 D/A 신호변환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 통신기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라디오수신기, 비디오폰, CCTV 카메라, 모듈레이터, 음성 및 영상분배기, 금전등록기, 교통카드 충전기, 종합유산방송 기업자 단말장치, 실물화상기, 공중전화화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제본기, 튜너, 위상방송수신기, 전자시계, 턴테이블, 편집기, 지폐계수기, 전기소자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기업자 단말장치, 재단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원격제어방송기기, 리시버, 음질조절기,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비디오게임기구, 영상전송기, 어학실습기, 번호표발행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 변환기, 인체영상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 형광램프용 스타터, 음성플레이어, 컴프레서 케이트, A/V신호수신기, 앰프, 스캐너, 동전계수기, 음성 음향신호 및 그 밖의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전화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CATV방송수신기, 전동타자기, 팩시밀리기기, 비디오키메라	전자안전센터
공급자적합성 확인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회전기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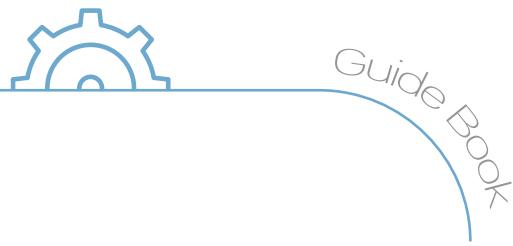


부록

①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1] 안전인증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절연전선, 케이블, 코드, 코드세트
전기기기용스위치	스위치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설비용 스위치, 코드스위치, 전자식 스위치, 리모트 콘트롤 스위치, 시간지연스위치, 조광기, 제어회로용 스위치
	전자개폐기	전자개폐기
전원용 커파시터 및 전원필터	커파시터 및 전원필터	X·Y 커파시터, 전파장해역제용 전원필터, 형광등용 커파시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기기용접속기류, 상호연결커플러, 플러그 및 콘센트, 케이블릴
전기용품보호용부품	퓨즈	퓨즈, 온도퓨즈
	차단기	기기보호용 차단기,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교류아답터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스팀해빙기, 고압세척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전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주방용전열기구	전기레인지, 전기오븐기, 전기거치식그릴, 전기호브, 전기곤로, 전기열기, 전기토스터, 전기프라이팬, 전기휴대형그릴, 전기고기구이기, 와플기기, 핫플레이트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모발관리기	전기머리인도, 모발발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가甫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바터제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압축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저기, 전기골절기, 기타주방용 전동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커피메이커, 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우유가열기, 젖병가열기, 요쿠르트 제조기,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온수기	전기온수기, 순간온수기
	전기냉장·냉동기기	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전기충전기	전기충전기
	전기건조기	회전형전기건조기, 손건조기, 전기건조기, 의류관리기
	전열기구	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온풍기, 축열식전기난방기, 전기 모양 히터, 팔릿 스토브
	전기마사지기	전기마사지기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전기기기	냉방기	냉방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전격살충기
	팬, 레인지후드	선풍기, 송풍기, 흔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
	회장실용 전기기기	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자, 오물흡입기
	가습기	가습기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전기드릴, 전기드라이버, 전기그라인더, 포리셔, 전기샌더, 전기원형톱, 전기햄머, 전기금속기위, 전기테이파, 전기윙복톱, 전기진동기, 전기섀인톱, 전기대패, 전기잔디깎이, 전기못총, 라우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정보·통신·사무기기	직류전원장치	직류전원장치,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거제대 포함)
	단전지	단전지
조명기기	램프홀더	형광램프 홀더, 에디슨 나사형 홀더, 기타 램프 홀더,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일반조명기구	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투광조명기구, LED조명시스템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램프용자기식안정기,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
	안정기내장형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LED포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리튬이차단전지	리튬이차단전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2] 안전확인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절연변압기	고주파월더	고주파월더
	전기용접기	전기용접기, 권총형아크접착기
전기기기	과일껍질깎이	과일껍질깎이
	전기용해기	왁스 용해기, 쇼코렛용해기, 파라핀 용해기
	이·미용기기	두피모발기,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손톱정리기, 전기면도기, 전기이발기, 안면시우나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전기이발용의자, 전동침대, 전기온열의자, 각도조절의자
	컴프레서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침대
	구강청결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해충퇴치기	해충퇴치기, 전기포충기
	전기집진기	전기집진기
	서비스기기	전기광택기, 수하물보관기, 지폐교환기, 동전교환기



부록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전기기기	전기에어커튼	전기에어커튼
	팬코일유닛	팬코일유닛
	폐열회수환기장치	폐열회수환기장치
	게임기구	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인형뽑기, 다크판, 농구게임기, 기타게임기구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기식기세척기, 전기식기건조기
	전기훈증기	전기훈증설충기, 전기방향확산기
	수도동결방지기	수도동결방지기
	산소이온발생기	산소이온발생기
	전기정수기	전기정수기
	전기이온수기	
	전기세척기	초음파세척기, 과일야채세척기, 기타전기세척기, 오존수발생장치
	전기헬스기구	전기헬스기구
	전기차충전기	전기차충전기, 자동차아댑터
	가정용전동재봉기	가정용전동재봉기
	샤워나기기	전기시스템샤워나기기, 전기샤워나기기, 샤워나기기용전열기, 스팀샤워나용전열기
	관상 및 애완용전기기기	관상여용·식물용히터, 동물부화사육용히터, 관상여용기포발생기, 관상용전기야항
	기포발생기기	기포발생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
	전기분무기	전기분무기
	물수건마는기기 및 포장기기	물수건포장기, 물수건마는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주서, 주서믹서기
	게임기구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냉식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별보온기	전기찜질기, 별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전격살충기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
	전기소독기	전기소독기
	제습기	제습기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주방용오물분쇄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전기보온기, 전기주온기, 전기온장고
	유체펌프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 가열기기	납땜인두, 남땜제거인두, 권총형납땜기, 열가소성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전기욕조	소용돌이욕조, 반신·전신욕조, 발욕조



Guide Book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디스크플레이어	디스크플레이어
	오디오시스템	오디오시스템
	오디오프로세서	오디오프로세서
	영상프로세서	영상프로세서
정보·통신·사무기기	모니터	모니터,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프린터	프린터
	프로젝터	프로젝터
	문서세단기	문서세단기
	천공기	천공기
	복사기	복사기
	무정전 전원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디지털TV	디지털TV
	코팅기	코팅기
	노트북컴퓨터	노트북컴퓨터, 태블릿PC
	전지	전지
	백열등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상데리아 등
	방전램프	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온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조명기기	백열등기구를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체인형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할로겐등기구
	방전램프를 제외한 그밖의 램프	백열전구, LED램프, 할로겐전구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유예기간 중)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전기기기	감자탈피기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전기정미기
	전기빵 자르개	전기 빵 자르개
	애완동물 목욕기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 주류 숙성기	전기 주류 숙성기
	전기시계	전기시계
	적외선·자외선방사파부관리기	적외선방사 파부관리기
	자외선방사 파부관리기	
	전기분수기	전기분수기



부록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전기기기	투영기	슬라이드 투영기, 필름스트립투영기, OHP, 필름투영기
	착유기	착유기
	보풀제거기	보풀 제거기
	새싹 및 콩나물재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비디오키메라	비디오키메라
	튜너	튜너
	라디오수신기	라디오수신기
	리시버	리시버
	음성기록계	음성기록계
	음성플레이어	음성플레이어
	위성방송수신기	위성방송수신기
	비디오판	비디오판
	음질조절기	음질조절기
	신호변환장치	AD/DA 변환장치
	컴프레서 게이트	컴프레서 게이트
	전자시계	전자시계
	CCTV 카메라	CCTV 카메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영상기록계	영상기록계
	A/V신호수신기	A/V신호수신기
	CATV방송수신기	CATV방송수신기
	텐테이블	텐테이블
	모듈레이터	모듈레이터
	비디오게임기구	비디오게임기구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앰프	앰프, 앰프내장형 스피커
	편집기	편집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영상전송기	영상전송기
	전자악기	전자악기
정보·통신·사무기기	스캐너	스캐너
	지폐계수기	지폐계수기
	금전등록기	금전등록기
	여학실습기	여학실습기
	전자칠판 및 보드	전자칠판, 전자보드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정보·통신·사무기기	동전계수기	동전계수기
	전동타자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 충전기	교통카드 충전기
	번호표 발행기	번호표 발행기
	티켓 발행기	티켓 발행기
	순번대기기	순번대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전기, (HF주파수대기기),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전기 (VHF/UHF주파수대 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 무선 헤드셋, IP 주소 공유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A/D 및 D/A 신호변환기	A/D 및 D/A 신호변환기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신호 처리기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
	재단기	재단기
	실물화상기	실물화상기
	입체영상기	입체영상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팩시밀리기기	팩시밀리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홀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금융단말기기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내비게이션,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원격제어방송기기	원격제어방송기기
	제본기	제본기, 스테이플러
조명기기	형광램프용스타터	형광램프용스타터



GuideBook

Index

안전인증

진공청소기	20	모발건조기	47
물흡입청소기	21	전기머리인도	48
전기비닥청소기	22	모발말개	49
전기표면세척기	23	주서	50
스팀청소기	24	주서믹서기	51
스팀해빙기	25	후드믹서	52
고압세척기	26	전기녹즙기	53
전기건조다리미	27	크림거품기	54
스팀다리미	28	계란반죽기	55
바지프레스기	29	혼합기	56
주름펴기	30	버터제조기	57
다림질프레스	31	압줍기	58
전기레인지	32	슬라이스기	59
전기오븐기기	33	전기퀼갈이	60
전기거치식그릴	34	전기깡통띠개	61
전기호브	35	전기칼	62
전기곤로	36	커피분쇄기	63
전기기열기	37	빙삭기	64
전기토스터	38	전기고기갈개	65
전기프라이팬	39	전기국수제조기	66
전기휴대형그릴	40	전기육젓기	67
전기고기구이기	41	전기골절기	68
외풀기기	42	기타주방용전동기기	69
핫플레이트	43	전기밥솥	70
전기세탁기	44	전기보온밥솥	71
전기탈수기	45	전기주전자	72
일체형세탁건조기	46	전기냄비	73
		전기물끓이기	74

전기약탕기	75	전기스토브	103
커피메이커	76	전열보드	104
전기스팀쿠커	77	전기라디에이터	105
달걀조리기	78	전기온풍기	106
우유가열기	79	축열식 전기난방기	107
젖병가열기	80	전구모양 히터	108
요구르트제조기	81	펠릿 스토브	109
증기조리기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82	전기마사지기	110
전기요	83	냉방기	111
전기매트	84	전격살총기	112
전기카펫	85	선풍기	113
전기장판	86	송풍기	114
전기침대	87	환풍기	115
전기방석	88	레인지후드	116
전기찜질기	89	전기냉풍기	117
발보온기	90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	118
전기온수기	91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119
순간온수기	92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120
전기냉장냉동기기	93	전기변자	121
제빙기	94	오물흡입기	122
아이스크림 프리저	95	가습기	123
전기냉수기	96	기타전기기기	124
전자레인지	97		
전기충전기	98	안전확인	
회전형 전기건조기	99	과일 껌질깎이	126
손건조기	100	왁스 용해기	127
전기건조기	101	초코렛 용해기	128
의류관리기	102	파라핀 용해기	129



GuideBook Index

두피모발기	130	인형뽑기	158
샴푸기기	131	다트판	159
모발기습기	132	농구게임기	160
손톱정리기	133	기타게임기기	161
전기면도기	134	전기식기세척기	162
전기야발기	135	전기식기건조기	163
안면사우나기	136	전기훈증살충기	164
전기야발용의자	137	전기방향확산기	165
전동침대	138	수도동결방지기	166
전기온열의자	139	산소이온발생기	167
각도조절의자	140	전기정수기	168
컴프레서	141	전기이온수기	169
전기온수매트	142	초음파세척기	170
전기온수침대	143	과일야채세척기	171
전동칫솔	144	기타전기세척기	172
구강세척기	145	오존수발생장치	173
해충퇴치기	146	전기헬스기구	174
전기포총기	147	전기차충전기	175
전기집진기	148	자동차어댑터	176
전기광택기	149	가정용전동재봉기	177
수하물보관기	150	전기스팀사우나기기	178
지폐교환기	151	전기사우나기기	179
동진교환기	152	사우나기기용전열기	180
전기에어커튼	153	스팀사우나용전열기	181
팬코일유닛	154	관상어용식물용히터	182
폐열회수환기장치	155	동물부화사육용히터	183
레이저사격기기	156	관상어용기포발생기	184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157	관상어용전기어항	185

기포발생기	186	음식물처리기	214
공기청정기	187	주방용 오물분쇄기	215
이온발생기	188	전기보온기	216
전기분무기	189	전기주온기	217
물수건포장기	190	전기온장고	218
물수건마는기기	191	유체펌프	219
주서	192	전기온수펌프	220
주서믹서기	193	납땜인두	221
후드믹서	194	납땜제거인두	222
전기녹즙기	195	권총형납땜기	223
크림거품기	196	열가소성도관용접기	224
계란반죽기	197	필름접착기	225
혼합기	198	플라스틱절단기	226
버터제조기	199	페인트제거기	227
압즙기	200	가열총	228
슬라이스기	201	전기조각기	229
커피분쇄기	202	소용돌이욕조	230
빙삭기	203	반신전신욕조	231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204	발육조	232
전기찜질기	205	기타전기기기	233
발보온기	206		
전기손난로	207	공급자격합성확인	
전기병석	208	감자탈피기	236
온열시트	209	전기정미기	237
전격살충기	210	전기빵자르개	238
자동판매기	211	애완동물목욕기	239
전기소독기	212	전기주류숙성기	240
제습기	213	전기시계	241



GuideBook

Index 색인(가나다순)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242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243
전기분수기	244
슬라이드 투영기	245
필름스트립 투영기	246
OHP	247
필름투영기	248
착용기	249
보풀제거기	250
새싹 및 콩나물 제거기	251
전기작동 도어록	252
공기청정기	253
이온발생기	254
전동형 롤스크린	255
기타전기기기	256

색인(가나다순)

OHP	247	납땜제거인두	222
가습기	123	냉병기	111
가열총	228	농구게임기	160
가정용 전동재봉기	177	다림질프레스	31
각도조절의자	140	다트판	159
김자틀피기	236	달걀조리기	78
계란반죽기(직류전원)	197	동물부화시육용 히터	183
계란반죽기(교류전원)	55	동전교환기	152
고압세척기	26	두피모발기	130
공기청정기(직류전원)	187	레이저사격기	156
공기청정기(교류전원)	253	레인지후드	116
과일껍질깎이	126	모발가습기	132
과일아랫세척기	171	모발건조기	47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184	모발밀개	49
관상어용 전기여향	185	물수건마는기기	191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182	물수건포장기	190
구강세척기	145	물흡입청소기	21
권총형납땜기	223	바지프레스기	29
기타전기기기(안전인증)	124	반신전신욕조	231
기타전기기기(안전확인)	233	발보온기(직류전원)	206
기타전기기기(공급자격합성확인)	256	발보온기(교류전원)	90
기타전기세척기	172	발욕조	232
기타주방용 전동기기(직류전원)	204	버터제조기(직류전원)	199
기타주방용 전동기기(교류전원)	69	버터제조기(교류전원)	57
기타게임기기	161	보풀제거기	250
기포발생기	186	빙삭기(직류전원)	203
납땜인두	221	빙삭기(교류전원)	64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180



GuideBook

Index 색인(가나다순)

산소이온발생기	167	온열시트	209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251	외풀기기	42
샴푸기기	131	왁스 용해기	127
선풍기	113	요구르트제조기	81
소용돌이욕조	230	우유가열기	79
손건조기	100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기구	157
손톱정리기	133	유체펌프	219
송풍기	114	음식물처리기	214
수도 동결 방지기	166	의류관리기	102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	118	이온발생기	188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119	이온발생기	254
수하물보관기	150	인형뽑기	158
순간온수기	92	일체형 세탁·건조기	46
스팀다리미	28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120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181	자동차 어댑터	176
스팀청소기	24	자동판매기	211
스팀해빙기	25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243
슬라이드 투영기	245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242
슬라이스기(직류전원)	201	전격살총기(교류전원)	112
슬라이스기(교류전원)	59	전격살총기(직류전원)	210
아이스크림 프리저	95	전구모양 히터	108
안면사우나기	136	전기 뺨 자르개	238
압축기(직류전원)	200	전기 작동 도어록	252
압축기(교류전원)	58	전기가열기	37
애완동물 목욕기	239	전기거치식그릴	34
열가소성도관용접기	224	전기건조기	101
오물흡입기	122	전기건조다리미	27
오존수 발생장치	173	전기고기갈개	65

전기고기구이기	41	전기분수기	244
전기곤로	36	전기샤워나기기	179
전기골절기	68	전기세탁기	44
전기광택기	149	전기소독기	212
전기국수제조기	66	전기손난로	207
전기깡통띠개	61	전기스팀쿠커	77
전기냄비	73	전기스토브	103
전기냉수기	96	전기시스템샤워나기기	178
전기냉장냉동기기	93	전기시계	241
전기냉풍기	117	전기식기건조기	163
전기녹즙기(직류전원)	195	전기식기세척기	162
전기녹즙기(교류전원)	53	전기약탕기	75
전기라디에이터	105	전기에어카튼	153
전기레인지	32	전기오븐기기	33
전기마사지기	110	전기온수침대	143
전기매트	84	전기온수기	91
전기마리인두	48	전기온수매트	142
전기면도기	134	전기온수펌프	220
전기물끓이기	74	전기온열의자	139
전기바닥청소기	22	전기온장고	218
전기밥솥	70	전기온풍기	106
전기방석	208	전기요	83
전기병석	88	전기육젖기	67
전기방향학산기	165	전기이발기	135
전기변좌	121	전기이발용의자	137
전기보온기	216	전기이온수기	169
전기보온밥솥	71	전기장판	86
전기분무기	189	전기정미기	237



GuideBook

Index 색인(가나다순)

전기정수기	168	젖병가열기	80
전기조각기	229	제빙기	94
전기주류숙성기	240	제습기	213
전기주온기	217	주 서(직류전원)	192
전기주전자	72	주 서(교류전원)	50
전기집진기	148	주름펴기	30
전기찜질기(직류전원)	205	주방용 오물분쇄기	215
전기찜질기(교류전원)	89	주서믹서기(직류전원)	193
전기치총전기	175	주서믹서기(교류전원)	51
전기총전기	98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82
전기침대	87	지폐교환기	151
전기카펫	85	진공청소기	20
전기칼	62	착유기	249
전기퀼갈이	60	초음파세척기	170
전기탈수기	45	쵸코렛 용해기	128
전기토스터	38	축열식 전기난방기	107
전기포충기	147	커피메이커	76
전기표면세척기	23	커피분쇄기(직류전원)	202
전기프라이팬	39	커피분쇄기(교류전원)	63
전기헬스기구	174	컴프레셔	141
전기호브	35	크림거품기(직류전원)	196
전기훈증살충기	164	크림거품기(교류전원)	54
전기휴대형그릴	40	파라핀 용해기	129
전동침대	138	팬코일유닛	154
전동칫솔	144	페인트제거기	227
전동형 롤스크린	255	펠릿 스토브	109
전열보드	104	폐열 회수 환기장치	155
전자레인지	97	플라스틱절단기	226

필름스트립 투영기	246
필름접착기	225
필름투영기	248
핫플레이트	43
해충퇴치기	146
혼합기(직류전원)	198
혼합기(교류전원)	56
환풍기	115
회전형 전기건조기	99
후드믹서(직류전원)	194
후드믹서(교류전원)	52

**알기쉬운
전기용품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북 -7번군 전기기기-**

1쇄 발행 2020년 12월 1일

2쇄 발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 한국제품안전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10호(구로동)

www.ksafety.kr

발행인 : 이영식

전 화 : 02-890-8300

팩 스 : 02-890-8309

주 죄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